



2021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Contents

인사말	4
-----	---

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1. 설립 목적	8
2. 조직 및 인력	10
3. 실적 및 성과 요약	11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실적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14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36
3. 센터연구과제	56
4. 조사관련 사업	63
5. 조사지원 사업	68

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성과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74
1-1. 공무원 교육	76
1-2. 컨설팅	81
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90

4 부록	
1. 기관 연혁	94
2. 기관 현황	96
3. 주요 행사	97

센터의 운영목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체 구현”



인사말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한 나침반으로서 법령에 부여된 책임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2021년까지 557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계획이 부실한 투자사업 예방을 통하여 58조원 가량의 지방예산 절감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고도화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사업과 단기 지침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유관기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외에도 우수 투자사업의 발굴과 기획, 양질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과 컨설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1년 역시 사업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69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142건 등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대표기관으로서 타당성 조사 지침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지침의 개정 연구를 수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은 의미있는 한 해로 기록될 수 있다 자평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 타당성조사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그리고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센터의 외연이 한 층 확장되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시기임과 동시에 워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공무원들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공무원 집합 교육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비대면) 공무원 교육은 총 4회 개최되어 총 34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83%가 교육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9%

가 업무 활용성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찾아가는', '찾아오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TOM(탐)나는 컨설팅(정기)을 추진하여 총 60건의 컨설팅을 수행해 당초 계획인 40건보다 20건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수시컨설팅도 병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책임감을 넓혀왔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팬데믹 위기상황에 대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국가 지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면의 슬기로운 타개에 일조하기 위하여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유관기관의 도움을 깊이 인식하고 기대와 기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추진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투자심사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깊은 책임감을 통해 수행하였던 임무를 담아놓았으며, 많은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자를 채워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조 기 현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MAC

1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소개

1

설립 목적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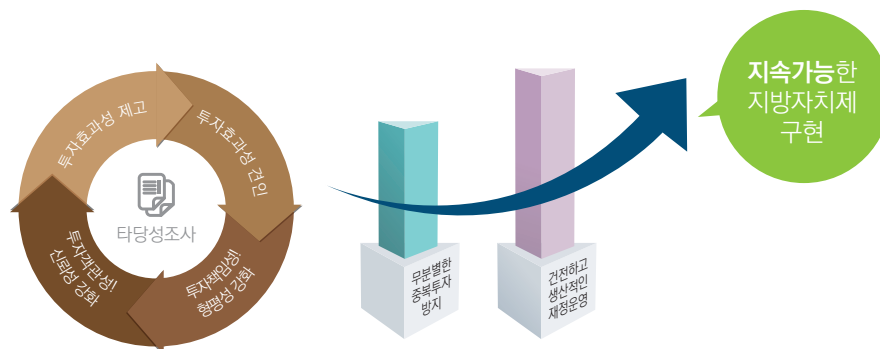
- 500억원 이상 지방재정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전년도 자본상태표상 자본금의 5% 이상인 경우, 출연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설립 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 인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
- 공신력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시
(감사원 감사연구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실태분석』, 2012.12)

설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27호)LIMAC 조직도(2021년 12월 기준)LIMAC 조직도(2021년 12월 기준)



2

조직 및 인력

LIMAC 센터는 원장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 전문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분야에 따라 3부 체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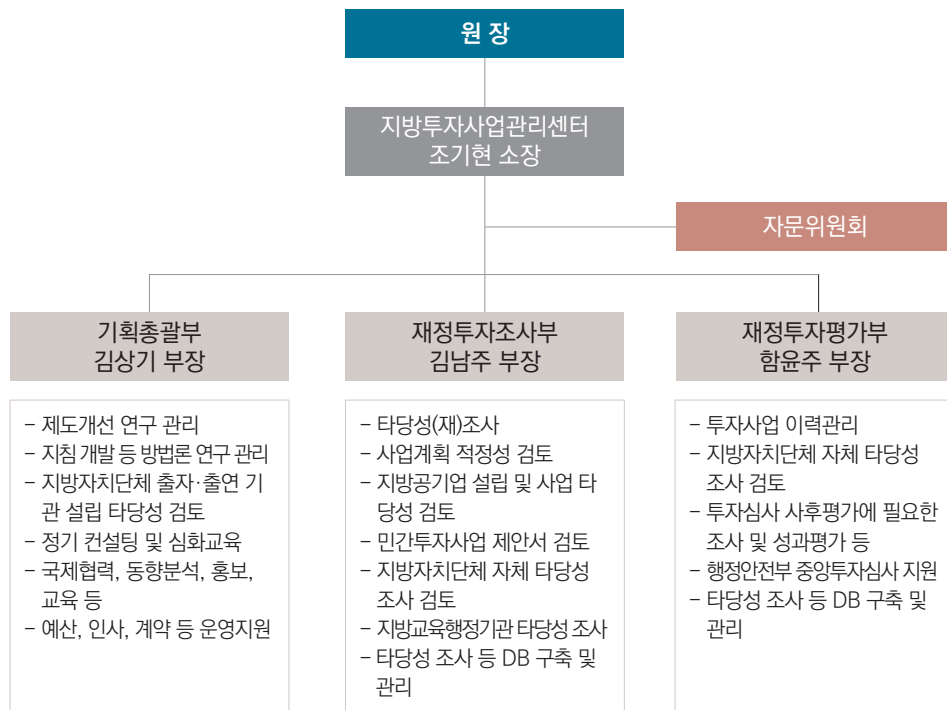
- 3부 체제 : 기획총괄부,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
- 기획총괄부는 인사, 예산, 교육, 홍보 및 센터 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뢰되는 출자·출연 기관 타당성 검토를 담당하며, 센터 현안 사안과 방법론 중심의 연구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재정투자조사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뢰되는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와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교육부와의 공동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
- 재정투자평가부는 투자심사 지원을 하는 업무로써 투자심사 이후 추진되는 지방정부의 사업들에 대해 투자사업 이력과 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및 타당성 조사의 현황 및 이력관리를 수행하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지원함

LIMAC 센터는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 과제 등 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2차례(상·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25인에서, 2021년 46인으로 분야별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면서 내실을 갖춰 운영 중

2

조직 및 인력

LIMAC 조직도(2021년 12월 기준)



LIMAC 센터의 인적자원으로는 2021년 12월 기준 연구직(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7명, 투자분석직(전문위원·전문분석원·분석원) 16명, 행정직 3명 등 총 25명임

● LIMAC 센터의 연도별 정원·현원 현황(2021년 12월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23	17	35	21	35	25	35	25	37	25
연구직	11	5	14	6	14	8	14	9	16	7
투자분석직	10	10	18	13	18	15	18	14	18	15
전문직	-	-	-	-	-	-	-	-	-	-
행정직	2	2	3	2	3	2	3	2	3	3

•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2021년 12월 24일) 반영시 목표치 30인 달성

3

2021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2021년 LIMAC의 타당성 조사 실적은 2020년 대비 68건(약정건수)으로 수행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자체타당성조사 검토는 2020년 144건 대비 142건으로 유사한 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률 현황

차수	2020년		→	2021년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1	33	24		36	24
2	35	23		24	17
3	50	34		12	7
4	-	-		26	17
수시	2	0		1	1
수행 금액(억원)	107.8억원			90.8억원	
합계	120	81		99	68

● 2020~2021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현황 비교

수행건수(건)	2020년					→	2021년					
	1차	2차	3차	수시	계		1차	2차	3차	4차	수시	계
사업비 적정성	22	12	28	3	65		20	15	11	14	7	67
자체타당성조사	20	27	30	2	79		21	17	11	24	2	75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실적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가.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1년도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총 99건이 의뢰되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68건이 약정(69%)되었음
- 약정된 2021년 타당성 조사 사업들 68건 중 61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됨(2022년 현재 기준)
-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률 현황

구분	차수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약정률(%)	수행건수(건)	수행률(%)
2021	1	36	25	69	24	96
	2	24	17	71	16	94
	3	12	7	58	7	100
	4	26	18	69	13	72
	수시	1	1	100	1	100
합계		99	68	69	61	90

주: 약정률=약정건수/의뢰건수(약정해지 건수 포함), 수행률=완료건수/약정건수, ※ 2021-1차 사업 해지 1건

- 2021년 타당성 조사 약정건수는 2020년 81건 대비 68건으로 16% 감소하였으며, 수행 금액은 2020년 107.8억원 대비 90.8억원으로 18% 감소함
-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률 현황

차수	2020년		→	2021년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1	33	24		36	24
2	35	23		24	17
3	50	34		12	7
4	-	-		26	18
수시	2	0		1	1
수행 금액(억원)	107.8억원			90.8억원	
합계	120	81		99	68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나. 2021년 1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1년 1차 타당성 조사는 총 25건이 약정되었으며, 1건 해지 및 24건이 조사 완료되었음

■ 2021년 1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시도	기초	사업명	조사
□□	본청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도로관리센터 및 품질시험소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구	△△ ○○ 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소방학교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	본청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	본청	◇◇ □□IC~▲▲대로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	본청	△△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구	△△ △△구 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융합타운 정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시 ○○출장소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	○○시	○○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	▽▽시	●● ▽▽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	○○시	△△ ○○ 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 도시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	□□시	■ ■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	○○시	◇◇ ○○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본청	▽▽ □□시 우회도로 2구간 건설	타당성 재조사
□□	▽▽구	□□ ▽▽ (가칭)△△학교 설립(특수학교)사업	공동타당성조사
○○	▽▽시	○○ ▽▽ (가칭)△△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공동타당성조사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시립미술관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미비와 안전 및 국제 전시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신규 분관 건립과 병행해 대표 공공 미술관으로서 랜드마크화하고자 함
- 전시동 리모델링 : 11,333㎡ 및 어린이집/사무동 철거 후 증축 11,214㎡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848.7억원으로 제시됨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이사비	예비비
금액 (억원)	888.54	719.42	-	79.13	1.65	0.78	6.95	80.6

- 본 사업의 수요 추정 결과 기존 대비 44.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중 외국인 수요의 경우, COVID-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높음
- 본 사업의 편익은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 대표적인 근현대미술관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비시장재 가치추정 방법으로 관람객 및 비관람객에 상관없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함
- 운영수지 분석 결과, 본 사업 시행 후 운영수지 비율은 5.5%로, 시행 전 4.7% 대비 0.8%p 증가하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열 미비 등으로 전시작품의 훼손사고, 시민안전 위협요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 내 시립미술관을 총괄하는 본관으로서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 규격에 미달하는 전시장 설비 수준을 개선할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해, 사업계획안에서 제시한 수준의 리모델링 범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전시장 및 강의실 등 증축되는 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전시 운영계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규모로 조성되는 통합수장고 사업이 2022년 준공 예정이므로 본 수장고의 증축 규모, 두 수장고 간 역할 구분 등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 도시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본 사업 구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실시설계 인가를 다시 받아 실효는 막았으나,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막은 문제가 존재하며, 또한 완충녹지 지정의 원인을 제공했던 ■■■선이 2021년 폐선이 예정되어 있어 완충녹지로 묶어 둘 수 없는 상황임
- ■■■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선로 이설로 도심구간인 본 사업 구간에 폐선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부지 인근에 우범지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 □□~○○ 구간의 폐선 예정 선로와 해당 선로 인근의 완충녹지를 지역주민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60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중 보상비는 460억원임(82%)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금액 (억원)	576.27	117.19	399.28	10.11	0.47	49.21

- 본 사업의 경제성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타 유사지역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지도와 방문의향을 고려해야 함
 - 응답자의 85%가 향후 도시숲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으며, 도심경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사업이 비시장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비율의 응답자들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아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편익 산정의 모수가 되는 ◇◇시의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시는 폐선 활용 방안에 대한 준비와 상생의 숲 기본 구상을 2019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단행 및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과 초등학교 부지 보상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의 준비정도와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사업구간에 포함된 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양궁훈련장, 급식소) 등에 대한 편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마련해야 함
- 도시숲 공원의 길이가 2.6km로 선형공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짧으며, 철길건널목 및 지하도로로 인한 단절 구간이 있어, 향후 부족한 녹지축 기능을 보완하는 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시는 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도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장기성장전략 토대 마련을 위하여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시청 및 ○○국가산업단지의 교통량으로 인한 도심지 가로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북축의 간선 도로망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국제해양관광수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광단지 및 연륙교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및 관광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민간자본의 실질적인 개발 유도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663.11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금액 (억원)	645.05	426.53	110.02	49.86	58.64

- ○○시에서 본 사업 구간과 ▽▽~■■간 도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우선순위 등 2개 도로서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존 도심지 혼잡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 교통체증 완화효과가 일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노선 시점부에 초등학교 및 웨딩홀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원 최소화 방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차로수 일치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 노선의 최대 경사는 7.95%로 계획되어 있어, 보조간선도로의 산지부 최대기준인 8% 이하를 만족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성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 노선 2.4km 중 0.64km가 터널구간으로, 터널 통과 후 단 구간 내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 등의 회전통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전부 지역의 확폭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의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본격적인 예산집행 예상 시점은 2024년 이후이며,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기간은 2023~2027년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자원조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시 우회도로 2구간 건설 타당성 재조사

사업개요

- □□시 도시우회도로(지방도 ▲▲호선 우회기능, □□중~△△로~△□로~◆◆고) 건설사업은 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4.3km의 도로를 신설하여 도심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1구간과 3구간은 왕복 4차로의 국비지원 사업이며, 본 사업인 2구간은 △△로~△□로 구간으로 왕복 6차로의 자체사업임
 - 도심구간 일주도로(지방도 ▲▲호선)는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시청, 시장 등이 입지하여 광역통행과 내부통행이 혼재하고 빈번한 신호교차로 운영으로 인해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관광객의 이용 증가와 광장 교차로 지정체로 도심구간을 우회하는 우회도로의 건설이 필요함
- 2020년 5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이 됨
 - 본 사업 구간은 2016년 8월 자체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00억원 미만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음
 - 사업구간의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전체 사업비의 35%(집행사업비 228.8억원, 실시설계 6.3억원, 보상비 222.5억원)가 기집행된 상황임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655.3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도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금액 (억원)	592.14	220.29	330.14	24.11	17.60

- 본 사업 구간인 2구간의 경우, 2016년 8월 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음
- 지자체가 가진 본 사업의 추진의지와 사업 준비정도는 높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연계사업인 1구간 및 3구간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구간의 기능 및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므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시의 □□신도시 지역 내 거점도서관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부대 이전으로 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교류 및 소통하고 정보와 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지역 공공도서관들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및 공동보존 기능을 담당할 아카이빙 센터의 조선으로 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49.62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초기투자비	예비비
금액(억원)	492.18	361.78	18.18	51.14	17.99	43.09
대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초기투자비	예비비
금액(억원)	474.15	347.82	18.18	49.53	17.17	41.45

- 본 사업은 신도시 내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11개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적정 단가를 산정한 후 사업계획 면적에 적용한 검토안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면적과 적정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은 검토안의 총사업비를 통해 도출함
-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보다 약 5배 큰 규모로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지원의 보조율이 40%이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이외의 지원은 시비로 조달할 계획에 있음
- 현재 운영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이므로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시의 인구증가율 및 신도시 내 추가적인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제화 2~3단계 조성 완료시 도서관 공급 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도서관 공급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개요

- ○○시의 역사 규명과 더불어 산업, 노동 및 역사 분야에서 시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일체감 조성 및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을 토대로 하여,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합박물관을 건립, 문화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대상지는 ◇◇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시행자가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중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손실보상 협의 진행중에 있음(2021년 11월 말 기부채납 완료 예정)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33.65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기타	예비비
금액 (억원)	810.02	610.84	21.20	74.11	30.11	3.01	2.25	68.50

- 본 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시가 건립하는 공립박물관으로 2021년 5월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이행 및 완료하였음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액이 검토안 총사업비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본 시설의 특성화 및 차별화,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성 강화, 소장품 수집 및 전시기능 외에 연구, 교육 및 체험 등의 융복합 기능 제고, 지속적인 유물 및 소장품 구입과 관리, 기존 소규모 박물관과의 위상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나. 2021년 2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1년 2차 타당성 조사는 총 17건이 약정되었으며, 이 중 16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1년 2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시도	기초	사업명	조사
■■	본청	■■ ▲▲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	본청	△△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	◆◆시	□□ ◆◆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시	○○ ▲▲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	○○시	◇◇ ○○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군	□□ ▽▽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남부산단 개발사업	2차 타당성 조사
▲▲	◆◆시	▲▲ ◆◆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시 ■■내 유원지개발(▲▲번) 사업	타당성 재조사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개요

- △△시는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과 소방력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를 합동청사로 건립하고자 함
- 2020년 4월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 소방조직 표준직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소방조직 표준화가 진행중임
- △△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도 소방본부 표준직제에 따른 조직 규모 확장 및 근무인원 증가로 시청사 내 사무공간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서부소방서는 35년 경과한 청사로 정밀안전진단 등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음 - 또한, 소방장비 보관창고 및 소방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훈련탑 등 지원시설과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배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97.27억원(보상비 제외 416.01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이사비	예비비
금액 (억원)	665.31	331.52	218.59	42.88	173	112	59.47

- 2019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에 따르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므로 서부소방서는 의뢰된 면적을 준용하였으며, 일반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만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및 면적을 재산정하였음
- 지자체는 본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조직확대 및 인력 증가가 예상됨을 제시하였으나, 본 검토 수행 중에 향후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음
 - 지자체가 제출한 “중기(22~25) 소방조직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조직확대안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정원 증가는 향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구역단위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이 요구됨
 - 사업대상지 14필지 중 도로에 접한 사유지(2필지)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2필지), 기획재정부(2필지), ∇ ∇도(3필지) 및 사유지(3필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상 및 매입과 관련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시는 사업부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도 소유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2021년 1월에 협의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지목상 도로(실질적인 도로는 존재하지 않음) 필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절차 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전체 부지의 36.3%)의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협의할 계획임
-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총사업비 중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조달할 계획이나, 소방안전본부는 교부세 사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시비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외에도 장비 교체, 보강, 출동로 확보, 소방훈련 등의 대상 사업 예산이 매년 편성됨에 따라, 노후 청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임
- 시설배치계획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함
 -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차장과 훈련탑의 지장요건 개선, 구조장비보관실의 동선 체계 조정, 지하주차장의 기동모듈이 상부층과 다른 구조로 계획됨에 따라 발생하는 단차 문제 및 기동수 증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도의 산업벨트축 상에서 △△~■~▽▽으로 이어지는 산업 집적효과 발휘를 위한 최적 장소로서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며, 1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립이 ■■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체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입지조건이 우수한 사업대상지를 배후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함
- 도의 전략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산업유치에 따른 집적효과 극대화와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권 산업벨트 형성, 기존 난개발로 개별 입지한 공장들을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사업은 ▽▽군이 출자하여 설립된 SPC에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군(20%), ○○건설(46%), ◇◇건설(22%), ▲▲증권(12%) 참여
- 우발채무에 대해, 본 사업 총 PF금액에 출자 지분(2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원에 대해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 후순위 제공(▽▽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서)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2,782.11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자본비용	예비비
금액(억원)	3,004.37	1,738.75	576.28	416.22	-	273.12

- 본 사업의 재무성 분석 결과는 지침에 따라 이자비용(236억원)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임
- 본 사업의 공동사업협약서 제8조(신용보강)에 따라, ▽▽군은 본 사업 재원조달 시 총 PF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원에 대해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을 후순위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향후 SPC가 PF 대출기간 내에 PF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군의 차입금 상환 의무가 존재하며, 검토안에 따른 ▽▽군의 향후 신용보강 최대 부담액은 2025년에 발생될 395억원으로 추정됨
 - 이에 본 사업 시행 시 SPC의 분양이익 및 분양손실과 관련하여, 추진주체별 위험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협약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공동협약서 상 다수의 세항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에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각종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조항에서 지자체 단독 사업 및 공영개발 등 타 사업추진방식 대비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협약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상 대출만기일(시기) 및 미분양 매입조건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후 순위 매입확약 조건만 제시되었음

- 또한, 도내 조성중이거나 미개발된 일반산업단지가 31개소임을 감안하여, 지자체는 이를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군 내 추진중인 2개 산업단지 및 유사방식으로 추진중인 □□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상 본 산업단지의 예상 분양가는 287,879원/㎡(조성원가의 109.7%)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주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평균 분양가 204,261원/㎡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분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계획 상 산업시설용지 공급 외에 지자체 및 도의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이 부재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경사도 15도가 넘는 지역이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중 임업용 보전산지의 비율이 높고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는 바, 사업 시행 시 인허가 및 위원회 심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의 신용보강 최대 부담액은 395억원으로 추정되나, 2022~2024년 지자체 연평균 신규가용재원은 188억원이므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본 사업의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개요

- ○○시는 매립장의 수명 증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838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금액(억원)	742.82	620.87	0.88	83.54	67.53

- 본 사업은 2008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온 자원관리센터 내의 50톤/일 용량의 소각시설을 대체할 200톤/일 처리용량의 신설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 본 조사에서 추정된 수효는 160톤/일이므로 ○○시는 시설계획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는 35톤/일의 굴착가연폐기물을 시설용량에 반영하였으나, 기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본 검토에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에 재사용 및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고려해 발전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의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다. 2021년 수시 및 3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1년 수시 타당성 조사는 1건, 3차 타당성 조사는 총 8건이 약정되었으며, 이 중 8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1년 수시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시도	기초	사업명	조사
□□	본청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 2021년 3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시도	기초	사업명	조사
◆◆	본청	◆◆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구	△△ □□구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시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환경센터 2,3호기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구청 부지 일대에 공공시설,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신규 건립으로 행정효율성과 행정업무 역량 강화, 주민 편의 증진 및 원도심 재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 건물(구청사, 구의회청사, 종합민원청사, 본관3청사, 청소년수련관)을 대체할 시설 및 문화집회시설과 민간시설(주상복합,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현 구청사 일대에 준공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구(10% 지분 출자) 및 ◆◆증권 등이 출자하는 PFV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구가 제공하는 부지에 PFV에서 공공시설(청사, 청소년수련관, 문화집회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민간시설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임(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음)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4,852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공공부문)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기타비	예비비		
금액(억원)	2,274.78	1,260.27	695.38	123.99	51.56	143.58		
검토안(민간부문)	총사업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용역비	분양경비	부담금	기타비	예비비
금액(억원)	3,760.72	2,644.29	310.87	163.41	168.49	114.95	30.00	328.71

- 본 사업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구의 주거 수요가 본 사업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고 있음
- 재무성 분석 결과, 재무적 할인율 4.5%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상승한 건설공사지수를 적용 및 주택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재분석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최근 금리상승의 여파로 조달금리가 4.5%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추가적인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본 사업의 부지 중 민간시설 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항됨에 따라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하는 등 개정된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사유로 본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보도되었음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부족한 자원 마련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현재의 방식 또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현시점에서의 본사업 추진의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신규가용자원 검토 결과, 구에서는 5억원을 PFV에 출자하면 되므로 출자금 마련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환경센터 2,3호기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사업개요

- ▲▲시는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를 대비한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매립장 수명 증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존 소각시설(2,3호기)을 대체하는 현대화된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838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보상비	예비비
금액(억원)	964.68	658.54	86.73	131.71	-	87.70

-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가동된 환경센터 2,3호기의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필수시설(법정시설)이므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함
- 본 사업 시설 중 1호기 처리용량 100톤/일과 2,3호기 대체시설의 사업계획 200톤/일 등 총 300톤/일을 고려시, 검토안(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일부) 및 대안(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전량) 모두 적정성은 부족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월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 ▲▲시, ☹☹시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이지만, 대안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본 사업 대체시설이 건립될 현 센터 내의 파쇄시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음
- 본 환경센터의 경우, 주변 열 수요처의 신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회수 효율 극대화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라. 2021년 4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1년 4차 타당성 조사는 총 18건이 약정되었으며, 이 중 13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1년 4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시도	기초	사업명	조사
◆◆	본청	◆◆시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 □□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	□□ ○○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	□□ ○○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시청 및 ◆◆시의회 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본청	▽▽ 국지도0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시	▽▽ ○○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간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본청	○○ △△~●●간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 ■ 시	▽▽ ■ ■ ◇◇연구개발특구 ▽▽ ▽ ▽ 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구 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시	□□ ◆◆ ▲▲센터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
◆◆	△△시	◆◆ △△ □□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본청	□□ (가칭)에코스쿨(생태전환교육파크) 건립사업	공동타당성조사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개요

- ◆◆시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청사를 ∇∇지역 이전 대상 기관으로 발표함
- 현 청사는 1979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상황이나, 교육 규모 및 채용, 역량 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므로 강의시설 확충 및 면접, 채용을 위한 별도의 전형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 미래 ◆◆시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092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기타비	예비비
금액(억원)	1,025.11	589.91	267.81	64.48	33.03	69.87

- 본 조사에서 재추정한 청사 이전 사업의 검토안 면적은 의뢰안 대비 약 2,693.44㎡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이는 사례기준 적용 및 공용공간 면적/주차공간 면적의 감소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함
-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으나, 현재 시설 계획 중 채용관의 경우 5층으로 인 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검토안 면적에 따른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4층으로의 층수 조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설 운영계획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사업대상지인 영어마을을 폐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지속적인 이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 면, 주민들의 의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 국지도00호선 ◆◆대교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랜드의 정식 개장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랜드와 지방도 000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망인 ◆◆대교를 계획하였음
 - △△랜드 사업 완료시 □□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이용 수요와 교통량 증가로 시내구간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의 생활권 기능 강화를 위한 순환형 도로 네트워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997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금액(억원)	1,140.04	884.92	71.50	90.97	92.65

- 본 사업은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시의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간 약 93억원에서 69억원 수준의 편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검토되었으며, 2021년 최종적으로 국지도 노선 승격이 확정되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과 ▽▽강 자전거길과 ◆◆대교의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방안 및 국비 미확보시 자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뢰안은 지방도 000호선상의 교차로를 시점으로 하여 □□도 내 ▲▲대교와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의 양측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4m폭의 보행공간이 조성되었으나, 지방도 000호선은 별도의 자전거 및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취약함
- □□도 내 계획된 차량 진출입 계획을 변경하여, ▲▲대교 시점과 ◆◆대교 종점 사이에 교차로를 산설하여 운영할 경우, 대교의 교량 종단계획고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옹벽구간이 거의 없어 생활속박시설지구와 국제컨벤션센터 지구의 물리적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본선 교량의 총 연장 감소와 더불어 램프교량을 설치하지 않아도 교통처리가 가능하여 램프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가설 교량 설치 규모 또한 축소되므로 총 공사비용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센터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

- 세계 무역 갈등 및 코로나19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항공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첨단화된 미래 산업의 유입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는 비행체 양산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방위사업청 및 군 납기를 위해 2023년까지 센터 설치 완료 후 2024년부터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인 □□산업단지의 변경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산업의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음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94억원으로 제시되었음

종합결론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금액(억원)	900.62	308.74	466.19	37.60	48.61	39.49

- 본 사업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공항시설법」의 비행장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향후 국토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필요로 함
- 신규가용재원 검토 결과, 기추진 사업 중 자체사업에 기반영되어 있어 2023년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가용재원의 99.6%를 차지하므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시는 항공산업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를 타깃 기업으로 선정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특정기업에 한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시의 재무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함
- ◆◆시는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일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투자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에 이익을 제공하므로 특혜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미분양으로 이익 창출이 불가하던 사업시행자에게 기회이익을 제공하게 되므로 향후 사업추진단계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각 기관과 체결한 MOA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중단 시, 시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면책사유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지매각에 대한 가격선택권을 ▲▲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 측에 불리한 조항으로 사료됨
- 정상 경영이 불가할 시에는 이와 같은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큼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의 실질적 이행 강제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산입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규정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기대효과인 신규 인력 고용, 추가 투자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가. 2021년 자체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자체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지방재정투자사업(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비의무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임
- LIMAC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이하 자체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수행건수는 142건으로 계획(100건) 대비 142% 초과 달성함
 - 사업비 적정성 검토 67건 중 30건(45%)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함
 - 2021년 사업비 적정성 및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실적(142건)은 작년 대비 2건 감소

■ 2020~2021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현황 비교

수행건수(건)	2020년					→	2021년					
	1차	2차	3차	수시	계		1차	2차	3차	4차	수시	계
사업비 적정성	22	12	28	3	65		20	15	11	14	7	67
자체타당성조사	20	27	30	2	79		21	17	11	24	2	75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나. 2021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의견서

■ 2021년 3차 ○○ △△도서관 건립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옹역비 등)	보상비	기타 (자산취득비)	예비비
의뢰서	473	363	42	17	8	43
재산정	507	337	50	66	14	40

구분	항목	결과									
총 사 업 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제시함	O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head> <tr> <th>구분</th> <th>의뢰서</th> <th>재산정</th> </tr> </thead> <tbody> <tr> <td>단가</td> <td>3,024천원/㎡</td> <td>2,675천원/㎡</td> </tr> <tr> <td>출처</td> <td>『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td> <td>조달청 유사사례</td> </tr> </tbody> </table> → 최근(2017~2020년) 조달청 사례 도서관의 공사비 평균단가(약 267.5만원/㎡)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됨	구분	의뢰서	재산정	단가	3,024천원/㎡	2,675천원/㎡	출처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조달청 유사사례	X
	구분	의뢰서	재산정								
	단가	3,024천원/㎡	2,675천원/㎡								
	출처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조달청 유사사례								
	3) 부대비(옹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조사 및 측량비, 설계의도구현비 반영이 필요함	X									
	4) 공사비(제로에너지 등)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부대비 및 제로에너지 공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함	X									
	5)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는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판단불가									
	6)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의뢰안은 ○○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부지로 16년 이후 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아 인근 근린공원 공시지가(338,250원/㎡)를 적용함 → 기부채납가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2016년 기준 대상지의 공시지가가 670,330원/㎡이기 때문에 의뢰안의 보상비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X									
	7)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기부채납 예정 용지로 현재는 사유지일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부지를 사유지로 보고 인근 근린공원 공시지가로 산정함	판단불가									
8)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반영되지 않음. 용도지역(녹지) 및 이용상황(전) 고려시 보상배율은 약 1.97배임	X										
9)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장비구입비는 반영하였으나, 비도서구입비, 기자재물품비가 미산정됨	X										
10)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옹역비, 제세공과금 합계의 100%로 반영하였으나, 기부채납 예정인 보상비를 제외하여 재산정할 시 감소함	X										
종합의견	→ 공사비는 의뢰안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상비 재산정, 일부 누락된 비용(제로에너지 및 부대비)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결과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3차 □□○○○○체육공원 조성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의뢰서 내 자타요약	자타(2차)	비고
총사업비	280억원	280억원	324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함
B/C	0.98	0.98	1.06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실시설계가 2021년 6월에 완료되어, 이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함 ※ 단, 세부공종별 사업규모 및 단가는 제시되지 않음	O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2021년 4월에 토지 및 자장물 보상이 완료됨. 보상비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매입가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O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별도의 토지조서 및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판단불가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별도의 토지조서 및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보상배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 매입가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됨	O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하지 않음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예비비를 반영하더라도 500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해당없음	
경제성분석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이용권역 설정'을 통해 이용수요를 추정함(이용권: 1차 △△읍, 2차 ○○군) - 이용횟수: 1차 이용권 연간 5회, 2차 이용권은 1차 이용권의 50%인 2.5회 적 ※ ◇◇시 공원녹지정책방향연구(1995)의 주택지역 공원 이용빈도(0.4회/월 적용) - 분담율: 1차 이용권 50%, 2차 이용권 25% - 이용률: 보수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용률 적용(연간 80% 가동율)	간편법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영동읍을 1차 수요권역, 영동군을 2차 수요권역으로 설정함	O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시 공원녹지정책방향연구(1995)의 주택지역 공원 이용빈도(0.4회/월)를 적용하였으나, 본 사업은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체육공원이므로 일반적인 공원의 수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사시설 3개의 연평균 방문객(49,136명)과 비교했을 때, 연간 방문자수 55,100명의 수요추정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X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금전적 편익(위탁운영업체 연간매출액 추정 결과)과 비금전적 편익(의료비 절감 편익)으로 구분해 추정함	객단가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산정시 단가는 ○○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용료를 적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비금전적 편익(의료비 절감편익)은 연간 방문객 중 고령인구 비율(29.4%, 16,190명)에 ○○군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60.4만원)의 25%(14.5만원)를 적용함. 그러나 25%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객단가 수준보다 높음 (▽▽대스포츠헌산업연구센터(2007) 연구에 따른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약 8만원으로 2020년 기준 물가보정시 약 10만원에 해당함)	X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산정시 적용한 객단가는 적정하나, 연간 이용객 추정 결과(55,100명)가 아니라 시설별 연간 가동일 및 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그러나 가동일/가동율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비금전적 편익(의료비 절감편익)은 정기회원 등록 후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에 한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단가 수준도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운영 이후 27년간)을 적용함.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음	X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해당없음 판단불가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연간 매출액 182백만원/년(금전적 편익과 동일)과 운영비(위탁운영) 600백만원/년으로 418백만원/년의 운영수지 적자(운영보조비로 투입)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간 매출액 산정시 적용한 가동률, 가동일수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시설 대비 순수익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 방식</th> <th rowspan="2">운영 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2,509</td> <td>55,100명</td> <td>위탁</td> <td>6</td> <td>601</td> <td>182</td> <td>-419</td> </tr> <tr> <td>□□군 공설운동장</td> <td>2,298</td> <td>46,714명</td> <td>직영</td> <td>6</td> <td>86</td> <td>1</td> <td>-85</td> </tr> <tr> <td>▲▲군 종합운동장</td> <td>2,860</td> <td>53,230명</td> <td>위탁</td> <td>5</td> <td>525</td> <td>1</td> <td>-524</td> </tr> <tr> <td>▼▼군 체육관</td> <td>3,066</td> <td>47,464명</td> <td>직영</td> <td>7</td> <td>614</td> <td>41</td> <td>-573</td> </tr> </tbody> </table>	시설명	연면적(㎡)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2,509	55,100명	위탁	6	601	182	-419	□□군 공설운동장	2,298	46,714명	직영	6	86	1	-85	▲▲군 종합운동장	2,860	53,230명	위탁	5	525	1	-524	▼▼군 체육관	3,066	47,464명	직영	7	614	41	-573	
	시설명						연면적(㎡)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2,509	55,100명	위탁	6	601	182	-419																																					
	□□군 공설운동장	2,298	46,714명	직영	6	86	1	-85																																					
▲▲군 종합운동장	2,860	53,230명	위탁	5	525	1	-524																																						
▼▼군 체육관	3,066	47,464명	직영	7	614	41	-573																																						
※ 유사시설은 유사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연면적 및 토지면적의 규모 및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함																																													
→ 본 사업의 수요 및 운영수지 분석결과는 유사시설 사례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운영수익이 유사사례 대비 과다하게 추정된 것에 기인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특이사항 기술	→ 투자심사 이력사항 - 2016-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행안부) 결과 : 조건부(2단계 심사) ⇒ 사업비 198억원 - 2021-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행안부) 결과 : 재검토 ⇒ 사업비 356억원 - 2021-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행안부) 2단계 심사 재상정					
	구분	당 초		변 경(재상정) '21년 제3차 중투심	비고 (21-1차 대비)	
		'16년 제1차 중투심	'21년 제1차 중투심			
	사업명	○○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체육공원 조성사업	좌동	-	
	위 치	○○읍 □□리 000번지 일원		좌동	-	
	기 간	2016~2022		2016~2023	기간변경	
사업비	198억 원 (균특 38.7, 도비 45.15, 군비 114.15)	356억 원 (균특 38.7, 도비 45.15, 군비 235.15, 지방채 37)	280억 원 (균특 39, 도비 45, 군비 127 지방채 69)	감 76억원		
종합의견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적정	적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추정
	→ 총사업비 중 일부 누락된 비용이 있으나, 실시실계 및 보상이 완료되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는 유사시설을 검토한 결과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 수요추정시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과정을 거쳐 추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정 결과는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편익 중 금전적 편익은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금전적 편익의 경우 주기적인 참여인원이 아닌 고령인구 비중을 반영한 이용객수로 반영하고, 객단가도 선행연구 결과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여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분석 결과는 편익 과다 추정으로 B/C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3차 △△ □□ 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446억원	446억원	-
B/C	0.62	0.62	-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건축공사비 단가(2,759천원/㎡, 부가가치세 제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단가(2,888천원/㎡, 부가가치세 제외)와 유사한 수준임	O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제로에너지 공사비가 누락되어 있어 추가 반영이 필요함	X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2021.02 토지매입 완료(2개사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O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10% 예비비 반영이 필요함	X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제로에너지와 예비비를 반영하더라도 5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상주 관리 인력 외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의 추가 고려가 필요함	X
경제성분석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프로그램 및 시설별 유사사례의 이용자수로 추정 → □□시 내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의 수요를 계획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과정 및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기타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의뢰서는 본 사업 준공 이후에 기존 □□수영장의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에 따라 신규수요와 이전수요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기존 수영장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결정한다면 의뢰서가 제시한 수요는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X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금전적 편익(프로그램 및 수영장 이용 수입, 대관 및 임대 수입, 주차 수입)과 비금전적 편익(의료비 절감, 체육시설 이용료 절감, 행정시설 임대료 절감)으로 구분해 추정함	운영수입과 간접편익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편익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자타 보고서 내 유사시설의 이용요금(프로그램 : 39,000원 ~77,000원, 수영장: 68,00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관 수입의 경우 대관 단가 및 예상 대관 스케줄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비금전적 편익) 1인당 평균 의료비 1,477,799원과 절감률 30%의 출처 및 산정근거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대스포츠타당성연구센터(2007) 연구에 따른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약 8만원으로 2020년 기준 물가 보정시 약 10만원에 해당함)	X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프로그램의 정원을 100%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으며, 과다 추정될 우려가 있음 → (비금전적 편익) 세부 산출 근거 및 참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의료비 절감 편익의 경우, 1인당 평균 의료비(1,477,799원), 절감율(30%)의 산정 근거 및 참고 자료 제시가 필요함. 또한, 의료비 절감 편익은 시설의 정기회원을 대상에 한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의뢰서의 1일 이용자 1,73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 이용료 절감 편익의 경우, 민간 운영 기준으로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때 419,322,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지만, 세부 시설별 민간 사용자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부가가치세 제외와 토지의 잔존가치 반영이 필요함	X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해당없음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연간 528백만원 흑자로 추정되었지만, 상주관리인력 이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X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m²)</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 방식</th> <th rowspan="2">운영 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8,700</td> <td>305,240(추정)</td> <td>위탁</td> <td>20</td> <td>811</td> <td>1,339</td> <td>528</td> </tr> <tr> <td>*□□수영장</td> <td>4,887</td> <td>561,875</td> <td>위탁</td> <td>20</td> <td>1,931</td> <td>2,194</td> <td>263</td> </tr> <tr> <td>△△국민체육센터(수영장)</td> <td>2,836</td> <td>160,362</td> <td>위탁</td> <td>23</td> <td>820</td> <td>694</td> <td>-126</td> </tr> <tr> <td>◇◇수영장</td> <td>8,887</td> <td>139,924</td> <td>위탁</td> <td>20</td> <td>1734</td> <td>1159</td> <td>-575</td> </tr> <tr> <td>○○수영장</td> <td>7,792</td> <td>165,391</td> <td>위탁</td> <td>27</td> <td>1370</td> <td>530</td> <td>-840</td> </tr> </tbody> </table>			시설명	연면적(m ²)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8,700	305,240(추정)	위탁	20	811	1,339	528	*□□수영장	4,887	561,875	위탁	20	1,931	2,194	263	△△국민체육센터(수영장)	2,836	160,362	위탁	23	820	694	-126	◇◇수영장	8,887	139,924	위탁	20	1734	1159	-575	○○수영장	7,792	165,391	위탁	27	1370	530	-840
	시설명	연면적(m ²)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8,700	305,240(추정)	위탁	20	811	1,339	528																																														
	*□□수영장	4,887	561,875	위탁	20	1,931	2,194	263																																														
	△△국민체육센터(수영장)	2,836	160,362	위탁	23	820	694	-126																																														
◇◇수영장	8,887	139,924	위탁	20	1734	1159	-575																																															
○○수영장	7,792	165,391	위탁	27	1370	530	-840																																															
* □□수영장의 현황은 의뢰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하였음																																																						
→ 본 사업의 분석결과(수요 및 운영수지)는 유사 시설과 비교하여 운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추정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특이사항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본 사업 내 수영장은 50m 8레인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포함□□수영장은 향후 생활체육규모(25m 7레인 이하)로 운영하거나 철거 후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투자심사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3차(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개발방식(위탁개발, 지방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②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설 규모 및 운영수지 재분석 ③ 지역주민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2021-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 투자심사 결과 보완 필요 ② 수영장의 사업규모를 생활체육규모(25m 7레인 이하 등)로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적정</td> <td>과소 추정</td> <td>판단 불가</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비 단가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는 상주관리인력 이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인건비 반영이 필요함 → 수요는 기존 □□수영장의 향후 운영여부에 큰 영향을(신규 및 이전수요 구분) 받지만, 운영여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기존 수영장을 철거할 계획이 없다면, 주변 경쟁 시설 고려하지 않아 수요 과다 추정 가능성이 존재함 → 금전적 편익은 프로그램 정원을 100%를 가정하였으며, 비금전적 편익 중 의료비절감편익은 정기회원이 아닌 1일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대 추정의 우려가 있음 → 편익의 과대 추정과 운영비의 과소 추정으로 B/C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과소 추정	판단 불가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과소 추정	판단 불가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종합의견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3차 □□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242억원	242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함
B/C	0.31	1.04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의 공사비는 유사사례(과학관, 잡월드, 전시체험관 사례)의 평균 단위공사비(3,159,264원/㎡)를 적용함 → 조달청 발주정보(www.g2b.go.kr) 중 유사시설(○○시립미술관, ▲▲미술관)의 평균 단위공사비(3,854,599원/㎡) 적용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X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전시시설공사비 및 조사 및 측량비가 누락됨 → 공사비에 제로에너지 공사비(약 5%)추가 반영이 필요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2020.1월 공시지가(18,100원/㎡) 기준으로 산정됨	O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사유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됨	O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인 사업은 지침에 따라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공사비 증가 및 이와 연동하여 용역비 및 예비비가 증가하더라도 500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기존에 운영되는 ◇◇미술관 1관의 운영비 자료를 기준 산정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추가되는 인력 4명에 한하여 적정하게 반영됨 → 향운합습기 수선비(10년 주기), 시스템 리뉴얼 비용(8년 주기)으로 총 1,410백만원을 반영함	O	
경제성평가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별도로 추정되지 않음. 다만 운영수입 추정시 관람객 343,62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X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X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X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관람객(343,629명)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1관(5,657㎡)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 이용객도 342,716명이므로 2관(6,125㎡)의 이용자수도 1관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 유사자치단체의 미술관 평균 이용자수와 ◆◆미술관 1, 2관 이용자수 합계를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X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 분석	편익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금전적 편익으로 관람료, 교육프로그램 수익,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CVM으로 사회적 편익을 추가로 산정함	CVM/객단가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 ◇◇시를 영향권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O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산정시 관람료 및 프로그램 단가는 ▽▽ 및 ▲▲미술관 평균입장료(일반 1,500, 기획 3,000) 및 ◇◇시 조례상 평생학습 수강료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임대료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0.3분기)'의 ◇◇시 평균단가를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 2,944.29원을 도출함	O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금전적 편익 산정시 관람료의 객단가는 적정하나, 연간 이용객(343,629명)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1관(5,657㎡)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 이용객(342,716명)이며, 2관(6,125㎡)의 이용자 수도 1관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 금전적 편익 산정 후에 사용 및 비사용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CVM으로 산정한 편익을 추가하여 편익 중복산정 및 이로 인한 과다추정의 우려가 있음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운영 이후 27년간)을 적용함.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음	X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해당없음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수입은 금전적 편익과 동일하게 제시됨. 적용한 이용료는 유사사례 및 포항시 조례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나, 관람객 수는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운영비는 기존 1관 운영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재투자비도 산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O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시설명		연면적 (㎡)	연간 방문객	운영방식	운영인력 비용	운영수지(백만원)		
	◇◇ 미술관	1관 (기준)	5,657	342,716명	직영	12*	3,734	6	-3,728
		2관 (본 사업)	6,125	343,629명		4	1,220	644	-576
		합계	11,782	686,345명		16	4,954	650	-4,304
	◆◆아트센터	5,605	220,801명	위탁	32	3,022	242	-2,780	
	■■미술관	9,661	113,037명	직영	43	2,203	152	-2,051	
	클레이아크△△	11,814	130,062명	위탁	51	2,710	354	-2,357	
주: *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상에는 운영인력이 2019년 기준 20명으로 제시됨 ※ 유사시설은 유사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미술관 중 연면적이 유사한 시설로 선정함 → 본 사업의 운영수지 분석결과는 유사시설 사례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운영수익이 유사사례 대비 과다하게 추정된 것에 기인함									
특이사항 기술	없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종합의견	과소 추정	적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 수요추정 추정시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과다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운영수입의 과다 추정이 우려됨 → 편익 중 금전적 편익(운영수입)은 수요 과다로 편익도 과다하게 추정된 것으로 보이며, CVM으로 추정된 사회적 편익과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편익의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경제성분석 결과는 편익 과다 추정으로 B/C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3차 □□ ○○ ○○컨벤션센터 증축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295억원	238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함
B/C	1.042	1.042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은 세부시설별로 공사비 단가를 달리하여 적용(1,107~2,233천원/㎡) 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2019년도 건물건축단가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것이라고 제시함. 다만, 1) 토목공사 대상의 부지면적(15,000㎡) 과 용지보상비의 면적(9,286.5㎡)이 상이함에 따라 추정 비용을 신뢰할 수 없고, 2) 현재 부차장 부지에 전시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비 110천원/㎡ 및 조경공사비 300천원/㎡는 과대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X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음	O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부지가 공유재산이나 공시지가 및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과대추정됨	X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포함되어 있음	O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보상배율이 반영됨	O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공사비+용역비)의 5% 반영되어 있음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토목공사 대상면적으로 보상비를 산출하더라도 500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이 없으며, 현 운영 시설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함	O	
경제성분석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KDI 유사보고서의 수요추정 사례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2019년까지 GDP 를 회귀분석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전시장 사용면적을 종속변수로 삼아 선형회귀모형으로 국내 전시장 2020-2040년의 수요 연면적을 산출함 → GRDP를 활용하여 권역별 전시장 사용면적 비중을 산출하였으며, 2024년 본 증축시설의 개관을 가정하고 △△ 타 지역 공급 예정인 전시장 규모를 고려한 결과, 개관 예정 연도인 2024년 2,717㎡, 2028년(5년차) 3,735㎡, 2033년(10년차)에는 5,132㎡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제시함 → 이에 따라 증축 전시장 규모(4,000㎡)는 개관년도인 2024년뿐만 아니라 개관 5년차(2028년)까지의 전시장 수요에 합당한 면적이라고 제시함	선형회귀 분석모형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 타 지역 공급 예정 전시장 규모도 고려함	O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 분석	편익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편익1은 전시장 부가가치 창출효과, 편익2는 기업 매출증대에 의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제시함	부가가치 창출효과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해당없음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편익1은 전시장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운영수익에서 재료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나, 임대시설의 공실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가동률의 경우 타사례보다 높은 수준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 항목으로 전시장임대사업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대행사업수익, 케이터링수익을 제시하였으며, 전시장 가동률로 개관 첫해 35%부터 매년 5%씩 증가하다 70%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제시함 → 편익2는 기업 매출증대에 의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 사례(KID 예타 보고서) 등 대규모 사례에서 조사된 기업 순매출액, 매출증대 기여도의 85% 수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85%에 대한 근거가 없음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5.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4.5%로 조정이 필요함	X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해당없음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운영수입은 편익1(시장임대사업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대행사업수익, 케이터링수익)과 동일하게 제시하여 수입이 과다추정됨 → 운영비의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여야 함	X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해당없음														
특이사항 기술	→ 없음														
종합의견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적정</td> <td>적정</td> <td>적정</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r> </tbody> </table>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적정	적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적정	적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 건축공사비 과대 추정, 용지보상비(공유지) 보상 배율 적용으로 과대 추정되었으나 용역비 및 예비비 과소 반영으로 인해 재추정 결과 적절한 수준으로 검토됨 → 운영비는 기존 운영 조직의 운영비용을 활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요는 선형회귀분석모형 사용 시 △△ 타 지역 공급 예정인 전시장 규모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편익은 임대시설의 공실률 미고려, 타 사례보다 높은 수준의 가동률 가정 및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여도 가정 등으로 과대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수요는 적절한 수준이나, 편익 과다 추정으로 B/C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4차 ○○ □□문예회관 건립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용역비 등)	보상비	기타 (자산취득비)	예비비
의회서	432	315	47	46	24	-
재산정	538	372	47	46	24	49

구분	항목	결과		
총 사 업 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제시함	O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X		
	구분		건축	제로에너지
	의회서		3,572천원/㎡	0.8억원
	출처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재산정	3,453천원/㎡	17.5억원 (공사비의 5%)	
	출처	조달청 유사사례 (△△문화예술회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추정 방안」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O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제로에너지 공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함	O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유지는 공시지가, 사유지는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함	O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O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아트홀 개관 전 자산취득비 단가(1,741.1천원/㎡)를 적용함	O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하지 않음	X			
종합의견	→ 일부 누락된 비용(제로에너지, 예비비)을 추가하면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4차 ○○ △△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용역비 등)	보상비	기타 (자산취득비)	예비비
의뢰서	491	349	37	60	-	45
재산정	545	338	37	128	-	41

구분	항목	결과		
총 사 업 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20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의 전시시설 공사비에 물가 상승률 3%(2022년 기준)를 반영함 → 전시 공사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국립□□과학관·국립▲▲과학관·국립◇◇과학관 어린이과학관)의 평균 공사비 단가에 물가상승률 3%(2022년 기준)를 적용함	O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X		
	구분		건축	전시
	의뢰서		3,103천원/㎡	2,470천원/㎡
	출처		2020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의 5개 사례(물가상승률 3% 반영)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 평균단가(물가상승률 3% 반영)
	재산정	2,631천원/㎡	3,666천원/㎡	
	출처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사사례(국립□□과학관 어린이과학관 및 과학교육캠프관, 국립◇◇과학관 어린이과학관, 국립▽▽기상과학관)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추정한 전체 공사비 금액은 의뢰안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의뢰안의 건축/전시공사비 단가는 재추정시 참조한 사례 단가보다 각각 높거나 낮은 수준임. 다만 전체 공사비는 재추정 결과 의뢰안과 유사한 수준임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재산정된 부대비와 유사한 수준임	O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제로에너지는 공사비의 10%로 반영되었으나, 조사측량비, 전시설계 감리비 등이 누락됨 → 과기부-○○도-△△시 업무협약체결 상 사업의 범위는 전문과학관, 기반시설(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우수/폐수 처리시설, 주차장, 진입도로 등) 설치, 부대시설(게스트하우스, 홍보관, 수장고 등)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반시설 설치비의 경우 ■■■부지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전체 공원조성사업에 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별도 계산할 필요가 있음	O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시는 국방부에 2019년 6월 본 사업대상지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 9월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소유권 이전 시점에 추가적인 토지 매입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시 답변, 2021.9.23.) → 과기부-○○도-△△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가감정 평가금액 420,000원/㎡, 2022년 기준)할 예정이나, 의뢰안에서 산정한 규모인 7,800㎡는 연면적이므로 국유지 보상비 산정시 건축면적인 3,800㎡를 적용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총 사 업 비	→ 과기부 매입예정부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기준 공시지가 80,5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최근 토지가 매입되었으므로 실거래가(또는 계약가격)와의 비교가 필요하며, 소유권 이전시점에 발생할 토지보상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시-국방부의 토지 매입 계약가격은 의뢰안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36,000원/㎡(2016년 기준)인 것으로 △△시로부터 답변받음(2021.9.23.)	X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전체 부지 중 과기부 매입예정부지를 제외한 면적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부지면적 수정(34,200㎡→38,200㎡) 및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O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과기부 매입예정부지는 가감정 평가금액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함 → 전체 공원 부지는 2019년 국방부로부터 △△시 매입할 당시 236,000원/㎡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추가적인 토지 매입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시 답변 2021.9.23.). 따라서 과기부 매입예정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이용현황 및 지목을 고려한 평균보상배율은 3.635이며, 공시지가 80,500원/㎡에 적용한 결과 보상비 단가는 실거래 단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292,618원/㎡으로 재산정됨	X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운영설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시공사비에 기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O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는 사업비의 10%로 반영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산정 결과 증가된 토지보상비에서 기투입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X
종합의견	→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적용시 감소 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변동하지는 않음. 다만 보상비 산정 시 실제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3,800㎡를 과기부 매입예정부지로 설정 및 나머지 부지에 대해 실매입가 또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 방식으로 재산정할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범위 관련 :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원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별도로 추진 예정이며, 수정고 및 게스트하우스 등은 공원 내 타시설과 공동 활용 예정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과기부-△△시-○○도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본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업부지 내 본 사업과 사업 성격상 연계된 기업홍보관, 편의시설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 정도(추진여부, 사업비 및 일정 등 세부계획) 등을 확인하여 본 사업비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4차 □□ ◆◆ 차량용 반도체 · 자율주행 R&D센터 신축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용역비 등)	보상비	기타 (자산취득비)	예비비
의뢰서	487	321	33	87	-	46
재산정 (운영설비비 제외)	357.4	277	37	13	-	31.4

구분	항목	결과	
총 사 업 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O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X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의뢰서		2,800천원/㎡
	출처		조달청 연구시설 유사사례 (■■연구원 ○○ 캠퍼스 신축공사, ■■연구원 △△ 캠퍼스 건축공사)
	재산정	2,417천원/㎡	
	출처	조달청 연구시설 유사사례 (◇◇지원센터 건립공사, □□연구센터 건립 건축공사, ▲▲지원센터 건립 건축공사) 제로에너지 공사비 5% 포함	
	→ 연구시설 유사사례 검토 결과 공사비 단가가 다소 과다한 것으로 검토됨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O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X	
→ 제로에너지 공사비를 고려하여 21년 3차 의뢰서 적용된 공사비 단가(2,174천원/㎡) 대비 28% 증가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			
보 상 비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X	
	→ 사업부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 시 용도 변경(지목 대)을 고려하여 인근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 현재 지목 기준(공원) 개별공시지가(21.1월 기준 226,000원/㎡)를 적용시 보상비가 감소함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O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기 타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X	
	→ ◆◆시는 본 시설 입주 예정인 ▽▽연구원이 운영설비비를 부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누락하고 총사업비를 산정함 → 그러나 운영설비비는 해당 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로 총사업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예 비 비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O	
→ 총사업비의 10%를 반영함			
종합의견	→ ◆◆시는 입주예정기관인 ▽▽연구원이 운영설비비를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제시하였으나,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이 필요한 장비 구축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건물신축에 대한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설비비 포함하여 재산정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2021년 4차 △△○○▲▲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217억원	911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함 (자타는 단지조성 사업계획이며, 의뢰서는 단지 내 체육센터에 한정됨)
B/C	0.59	0.825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건축공사비 단가(체육시설 3,037천원/㎡, 복지시설 2,380천원/㎡)의 경우, 2020년 조달청의 사례를 기준으로 시점보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신 유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임	○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음	○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함	○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전 □□부대 부지로 전체 국유지임	X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감정평가 결과이므로 보상배율보다 높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음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지 않음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예비비를 반영하더라도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음	○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은 없지만 수영장과 GX는 강사 1인이 하루 12~16개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과소추정의 우려가 있음	X	
경제성분석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수요는 세부 프로그램 계획 없이 각 시설별 가용인원을 적용함	수용력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시설별 가동률 100%를 적용하여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수영장의 경우, 운영시간 내내 전체 레인에 대한 강습인원을 산정하고서 시간제 이용객(자유수영)을 중복 산정함	X
	편익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금전적 편익(운영수입, 임대료)으로 운영수지분석의 수입과 동일하게 추정함	객단가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 분석	편익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시설이용료는 유사시설 이용료를 참고하여 적용함		O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편익 항목 및 산정과정은 적정하지만, 수요의 과다추정으로 편익 역시 과다추정 우려가 있음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함 → 잔존가치 반영시 용지비 외에 건물까지 반영하였음 → 불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X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해당없음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유사시설 검토[◆◆체육센터 698백만원 적자, ▽▽스포츠센터 715백만원 적자] 결과 비용은 과소하고 수익은 과다한 수준으로 판단됨		X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 방식</th> <th rowspan="2">운영 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5,000</td> <td>638,636</td> <td>위탁</td> <td>23</td> <td>1,502</td> <td>1,376</td> <td>-126</td> </tr> <tr> <td>◆◆체육센터</td> <td>6,537</td> <td>400,027</td> <td>위탁</td> <td>22</td> <td>1,927</td> <td>1,232</td> <td>-695</td> </tr> <tr> <td>▽▽스포츠센터</td> <td>5,563</td> <td>57,926</td> <td>위탁</td> <td>35</td> <td>2,056</td> <td>1,341</td> <td>-715</td> </tr> </tbody> </table>							시설명	연면적(㎡)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5,000	638,636	위탁	23	1,502	1,376	-126	◆◆체육센터	6,537	400,027	위탁	22	1,927	1,232	-695	▽▽스포츠센터	5,563	57,926	위탁	35	2,056	1,341	-715
		시설명	연면적(㎡)	연간 방문객	운영 방식	운영 인력	운영수지(백만원)																																				
							비용	수익	순수익																																		
		본 사업	5,000	638,636	위탁	23	1,502	1,376	-126																																		
◆◆체육센터	6,537	400,027	위탁	22	1,927	1,232	-695																																				
▽▽스포츠센터	5,563	57,926	위탁	35	2,056	1,341	-715																																				
→ 본 사업의 분석결과는 유사시설 대비 순수익이 과다한 수준임																																											
특이사항 기술		→ 없음																																									
종합의견		총사업비	운영비	수요	편익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적정	과소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과다 추정																																				
		→ 건축공사비 단가는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 용지보상비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운영비는 유사시설(◆◆체육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검토한 결과 과소한 수준으로 판단됨																																									
→ 수요 및 편익은 상세 프로그램 운영계획 없이 시설별 가동률 100%를 적용하여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																																											
→ 운영비는 과소 추정되고 수요 및 편익은 과다 추정되어 B/C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3

센터연구과제

가. 센터연구과제 수행 실적

- 2021년에는 총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 행정안전부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최근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센터연구과제 채택

■ 2021년 센터연구과제 수행 실적

연번	유형	과제명
1	연구과제	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2		공공도서관의 수요 추정 모형 개발
3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 센터연구과제 요약

■ 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지역 공연시설 타당성조사 결과의 합리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공연시설 수요자의 공간적 범위인 영향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실증분석을 통하여 영향권 설정 방식을 연구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시설 이용행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용한 공연장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주지 외 시·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확인함 • (공연시설 유형분류)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을 위해서는 이용행태 및 공연 특성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형화 기준을 정립하며, 이를 위해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예회관별 운영 현황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공간분석 자료를 구축함 • (공연시설 유형별 영향권 설정)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양한 논리적 접근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리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이동시간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방문객 누적비율의 임계치를 80% 혹은 95%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광역 / 전국 범위의 영향권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영향권 범위를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해보았으며 영향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센터연구과제

■ 공공도서관의 수요 추정 모형 개발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예측 분석(predictive data analysis)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또는 통계적 학습(statistical learning)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 수요예측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수요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존 타당성조사의 수요추정 방법론 검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배깅(bagging),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익스트림 그래디언트 부스트(extreme gradient boost: XGboost), 회귀분석 등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 도서관 공급 정책의 충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 도서관 단위와 자치구별 도서관 자료 단위 모형 분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모형 개발로 타당성조사에서 적용가능한 수요추정방법 제시 도서관 공급의 충격을 측정하여 도서관 공급 정책의 방향성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난개발 수준과 주거수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순효과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균형발전은 지역간 균형, 즉 전국 대비 절대적 낙후성의 개선보다는 해당 지역 내의 균형, 즉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둠 난개발 지표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난개발 및 주거수준 유형화, 그리고 종합지수화를 통한 순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필요지역'을 도출함 기존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특정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난개발 지표 및 주거수준 지표의 변경값을 재산정하여 특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순효과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의 효과를 측정함 본 연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지표 변화를 통해 해당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낙후도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난개발이나 주거수준이 향상되느냐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센터연구과제

나.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 2021년에는 총 7건의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를 수행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을 포함하여 총 5개 분야의 분야별 지침 전면 개정 수행 및 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수행
 - 신규업무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행을 위하여 “PFV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 개발

■ 2021년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연번	유형	과제명
1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2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3		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4		산업단지 등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5		문화·관광·체육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6		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7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연구

3

센터연구과제

●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과제 요약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연구의
목적

- 일반지침은 2016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그동안 사회적 할인율 및 재무적 할인율의 변경, 용지보상비의 보상배율 수정 등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방투자사업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본 지침 연구는 '현실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일반적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사업 관련 변경사항 등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 이외의 조사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함
- (타당성 조사 수행사례 및 연구내용 반영) 지난 6년간 축적된 LIMAC의 타당성 조사 수행 경험과 연구내용들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의 고도화를 추진함
- (최신 타당성 조사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반영) 최근 개정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 연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비투입사업과 지방투자사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과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며, 외국의 최신 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필요 부분에 대해 반영함
-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상 쟁점 및 기존 내용 갱신) 기존 일반지침에 반영된 사항 중에서 최근 변경된 사항과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기대효과

- 일반지침 연구는 부문별 지침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괄적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본 연구는 지침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연구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관련 근거 및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실증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3

센터연구과제

●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지침 개정 연구는 2015년 기존 지침하에 그간 진행되어온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론적 및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자료 현황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여 방법론적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타 지침 사례 조사 ●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된 수요 및 편익 방법론 관련 쟁점 도출 ● 사업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해 분석방법론 세분화 및 사례분석을 통해 개정지침 마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사업 간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

● 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발간된 [도로 및 교통 지침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사업 위주로 지침이 구성되어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개정 및 업데이트의 필요성 높음 ● 이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침 갱신과 함께, 기존 도로 중심의 지침에서 도로, 철도, 공영주차장 등을 아우르는 도로 및 교통지침으로 개정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경과에 따른 공사별 공정 단가 수정 및 변경된 설계기준 및 법·제도적 기준 반영 ● 분석관련 세부방법론 추가제시(Sub-Area Analysis 및 교통량 정산 과정 상세화, 주차시설 편익 부분 보강, 연도교 연육교 사업 수요추정 및 편익 추정 방법 추가 등) ●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사례분석, 수요분석 가이드라인 등 제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주요 분야인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침의 고도화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 수행을 지원

3

센터연구과제

● 산업단지 등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산업단지 지침이 발간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지침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함 지침 개정 연구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산업단지 현황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 분석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등 분석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률, 산업단지 공급현황,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특성, 분양현황 및 특성,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최근 자료 기준으로 업데이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산업단지 수요추정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개정 설문조사 시 정책적 분석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가 유효표본수가 기준 미만이라도 입주 현황 조사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다양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무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항목과 비용 및 수입 추정 방법을 제시하여 분석의 일관성 제고 및 투자심사 시 재무성 분석 결과에 대한 참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의 분석방법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가 수행되도록 기여

● 문화·관광·체육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는 2015년에 수행되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지침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조사 방법론의 쟁점들을 점검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권 설정) 영향권 설정의 중요성 및 조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순서 및 데이터 분석방안을 지침 내 제시함 (수요 추정법) 중력모형, 추세분석 및 수용력 분석, 유사사례 준거법, 진출수요법 등에 관한 현재 지침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등을 바탕으로 개선된 내용을 제시함 (편익 추정법) 경제학적 이론 관점에서의 편익산정 방법에 관한 해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편익 추정방법 등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적용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함 (비용 추정) 총 사업비 항목을 재정리하며, 비용추정의 과정 및 보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조사의 일관성 및 논리성 제고가 기대되며, 자체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다 구체화 된 지침 개정내용을 통해 명확한 분석 및 사업추진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센터연구과제

● 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주요 지침의 조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중앙정부 및 세계은행 지침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함 • 타당성 조사 사후 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정량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기반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수요 추정을 위한 계량 모형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처리 혹은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침의 타당성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론은 영국 중앙정부 지침과 세계은행지침과 유사하였으나, 타당성 분석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등을 활용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연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PFV 또는 SPC 설립을 통한 출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Manual 수립과 분석의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V 및 Project Financing 개념의 검토 및 대표적인 사업 사례조사 • 사례연구와 별도로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협약서, 주주 간 협약서, 타당성 조사 및 검토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석하였음 • 도출된 PFV 도시개발사업의 기본구조와 도시개발 사업 비용 추정, 주거 및 상업 수요 편익 지침 내용을 제시하여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의 구조를 제시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을 준수하고, PFV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출자 타당성 검토의 기본구조를 제고함

4

조사관련 사업

가. 공무원 교육

- 교육 목적
 -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안내와 홍보
- 교육 개최 방식
 - 2021년 공무원 교육은 COVID-19의 유행으로 대규모 집합 교육 개최가 어려워 2020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공무원 교육을 수행
 - 온라인 공무원 교육은 상반기(5월, 6월)와 하반기(9월, 10월)로 셋째주 수요일로 계획하여 총 4회 수행으로 추진하였고, 차수마다 교육 참석 희망자명단을 취합해서 진행함
- 교육 내용
 - 주 교육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방법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투자심사 제도이며,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내용의 이해를 제고
- 교육 실적
 - 온라인 공무원 교육은 총 4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교육 신청 인원은 총 622명, 수강인원은 총 341명으로 나타남

■ 차수별 교육 신청 및 수강인원

구분	시기	신청 인원	수강 인원
1차	05/20(목)	165명	117명
2차	06/16(수)	219명	115명
3차	09/29(수)	141명	82명
4차	10/27(수)	97명	27명
합계		622명	341명

4

조사관련 사업

■ 상반기 교육 시간표

교육 내용	시간		발표
인사말	13:27~13:30(^3)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	강의	13:30~14:30 (^60)	LIMAC (재정투자조사부) *1차 황재민 부연구위원 발표 **2차 박용덕 전문위원 발표
	질의응답	14:30~14:40 (^10)	
휴식 시간	14:40~14:50 (^10)		
투자심사제도 (이력관리제도)	강의	14:50~15:50 (^6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허정 팀장 발표) *이력관리제도 - LIMAC 재정투자평가부
	질의응답	15:50~16:00 (^10)	
휴식 시간	16:00~16:10 (^10)		
이력관리제도	강의	16:10~17:10 (^60)	LIMAC (재정투자평가부) *1차 함윤주 부연구위원 발표 **2차 김제국 부연구위원 발표
	질의응답	17:10~17: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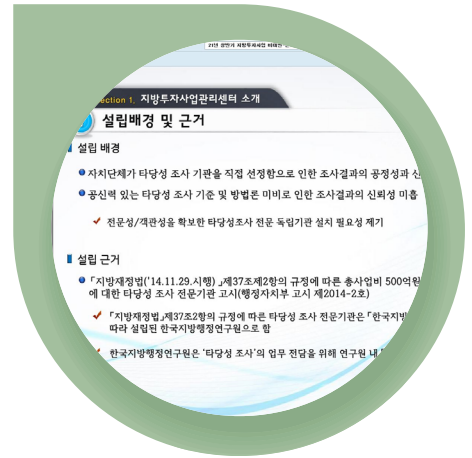
■ 하반기 교육 시간표

교육 내용	시간		발표
인사말	13:27~13:30(^3)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	강의	13:30~14:30 (^60)	LIMAC (재정투자조사부) *3차 박용덕 전문위원 발표 **4차 황재민 부연구위원 발표
	질의응답	14:30~14:40 (^10)	
휴식 시간	14:40~14:50 (^10)		
이력관리제도	강의	14:50~15:50 (^60)	LIMAC (재정투자평가부) *3차 함윤주 부연구위원 발표 **4차 김제국 부연구위원 발표
	질의응답	15:50~16:00 (^10)	

4

조사관련 사업

■ 온라인 공무원 교육 현장 사진



4

조사관련 사업

나. 내부역량강화

- 내부역량강화 목적
 -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LIMAC 구성원의 내부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유관 기관의 관계자 초청 교육을 통한 타당성 조사 방법론 등을 고도화
- 주요 주제
 - 타당성 조사 수행 및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인문 및 교양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
- 개최 방식
 - 내부역량강화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매달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COVID-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 부서별 소규모 세미나(브라운백 형식)으로 수정하여 수행
- 실적
 - 2021년 내부역량강화는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주택시장, 교통, 폐기물까지 다양한 주제를 세미나 주제로 다루었음
 - 내부역량강화 프로그램은 COVID-19로 부서별(기획총괄부 6회, 재정투자평가부 6회)로 전문가를 섭외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

■ 2021년 LIMAC 내부역량강화 실적 요약

번호	시기	발제자	주제
1	2021.04.07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책증거수집방법 다양화와 종합 : 조사방법의 최근동향과 연구사례
2	2021.04.16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3	2021.10.01	이창용 서강대학교 교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개념(concept)
4	2021.10.07	이창용 서강대학교 교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models and application
5	2021.11.02	송태진 충북대학교 교수	스마트폰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량 조사방안
6	2021.11.03	이재준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회전교차로의 효과성
7	2021.11.04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한국 주택시장의 선분양 이론과 실제
8	2021.11.05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선방향
9	2021.12.07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 개선방안
10	2021.12.09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주요국가 예타조사 실태 및 시사점
11	2021.12.16	이준엽 UNIST 교수	ESG 투자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12	2021.12.23	이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지속가능 폐기물관리의 필요성과 그 효과

4

조사관련 사업

다. 세미나

- 세미나 개최 목적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 분석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투자사업 평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세미나 주요 주제
 - 지방투자사업 관련 제도 발전과제 및 타당성 조사 관련 방법론 등 사안별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
- 개최 형식
 - 단독 및 관련 학회(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와 공동 개최
- 세미나 개최 실적
 - 2021년에 총 4회의 세미나를 개최 및 운영하였으며, 지방투자사업 연말세미나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세미나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운영한 실적도 있음

■ 2021년 LIMAC 구성원의 세미나 실적 요약

구분	시기	내용
1	2021.10.26	• 전문기관 다원화에 따른 LIMAC 발전방안
2	2021.12.16	•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 - 주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 (소주제 1)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제도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소주제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원가분석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일 비교 및 실제 적용 연구를 중심으로
3	2021.12.16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 (소주제 1) 민간투자제도 및 절차의 이해
4	2021.12.21	• LIMAC 연말 세미나 - 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부문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 - (소주제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 (소주제 2)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소주제 3) 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소주제 4) 산업단지 등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소주제 5) 문화·체육·관광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 (소주제 6) 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5

조사지원 사업

가.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사과제 운영지침」 제16조에 의거한 자문기관임
 - 자문위원회는 1) 조사과제에 관련한 자문 및 평가 2) 연구과제 및 먼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음
- 2021년에는 지방재정, 조직·인사, 지방행정, 지역발전 분야 7인의 전문가 추가 위촉하여, 조사과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46인의 비상근위원으로 운영함
- 2021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차례의 자문위원회를 진행함
 - 제1회 자문위원회는 COVID-19로 인하여 On-Off 동시 추진 방식으로 센터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제2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원주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함

■ 2021년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주요 논의 내용	참석자
1차 LIMAC 자문위원회	2021. 06.11	LIMAC 대회의실 및 온나라PC영상회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황(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 보고 및 자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인 LIMAC 자문위원 27인 행정안전부 2인
2차 LIMAC 자문위원회	2021. 11.25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황(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보고 및 자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인 LIMAC 자문위원 22인

5

조사지원 사업

- 2021년 상반기에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추진하여 개최함

- 상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구분		주요 자문 내용
조사 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 유도 방안(패널티 등)을 제도 도입 강구 필요 • 웹 기반, 모바일 기반의 설문조사를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조사 보고서 내 현장 실사 내용 포함 필요 • 민간의 사업성(재무성) 평가와는 구별되는 공공성(경제성) 평가에 대한 접근 필요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마련 필요 • 지자체가 자체타당성조사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투자사업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 DB구축과 향후 해당 DB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실적을 활용하여 분석 및 산출 방식에 대한 접근이 쉬운 가이드북 필요
조사 관련사업 (학술 행사)	공무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자체타당성조사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증 제도 마련 필요
조사 지원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이용하여 LIMAC의 법적 지위 제고 방안 고려 • 지방정부로부터 연구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국가재정법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법적 지위 제고
기타	조직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 지속가능한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채용 시급 • 인력 충원 시 도시분야 전문인력 필요 •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봉과 복지를 타 기관 대비 상향 위한 사례 검토 필요 • 업무량 과다와 관련하여 전문기관별 사업의 선택과 집중, 외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향 검토 필요
	원주 이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화상회의, 서울 회의실 확보 등) 고려 필요 • 원주 혁신도시 이전이 지역과 LIMAC의 상생 발전되는 방안 고려 • 청사 이전 이후의 단기, 중기, 장기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 • 타 원주 이전 기관과의 협력으로 주거 이전 등의 지원 방법 모색 필요 •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재택근무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5

조사지원 사업

- 2021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프라인으로 개최함

■ 하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구분		주요 자문 내용
조사 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AC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차원을 구분하여 제시 필요 • 설문조사 과정에서부터 매뉴얼 마련 등으로 조사과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투자사업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관리나 투자심사 관리, 지방재정분석제도 등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는 DB관리나 운영방식 개선 필요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사업에 지방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합한 지침연구 필요 •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요구도 등 비계량화 및 정성적 분석에 대한 기준/항목을 매뉴얼이나 지침, 분석 방법으로 제시 필요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시도 공투센터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LIMAC에서 매뉴얼 발간시 참고 필요
조사 관련 사업 (학술 행사)	공무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차원에서 지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 필요 •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각 사업부서별 맞춤형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투자심사 의뢰 전 각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필요
	내부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AC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연수제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고려 필요
기타	조직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AC과 중복기관과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등 논의가 필요 • LIMAC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체연구의 양을 줄이는 대신 인력 보강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원주 이전 후 직원의 주거지나 직원 근무공간이 열악에 따른 사기가 저하 방지를 위해 연구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원주 이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이전 이후 회의참석의 어려움으로 회의실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자체 지원을 위하여 수요를 고려한 회의실 마련 필요

5

조사지원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 2021년에는 기존에 '찾아가는 컨설팅'의 설문결과 및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법(찾아오는 · 찾아가는 · 온라인)을 통해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진행
 - 2020년 "찾아오는 컨설팅"의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TOM(탐)나는 컨설팅으로 변경하여 추진
 - TOM(탐)나는 컨설팅의 '탐'의 음은 肫에서 따왔으며 Two-way On and off Meeting의 약자로, 1) 찾아가는, 2) 찾아오는 3) 온라인 총 3가지의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추진
 -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심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투자사업을 지원함
- 정기 컨설팅에는 총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차례에 걸쳐 60건의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희망 컨설팅 추진방식과 일정으로 고려하여 수행
 - 찾아가는 컨설팅 10건, 찾아오는 컨설팅 49건, 온라인 컨설팅 1건 수행
- 정기 외 기간에 진행되는 상시 컨설팅에서는 총 16건의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 조사의뢰 시 중점 준비사항, 사업기본계획 보완 등을 심도 있게 논의

■ 2021년 차수별 컨설팅 수행 실적

구분	컨설팅 기간	수행 건수
1차	3.29.(월)~4.8.(목)	7
2차	4.19.(월)~4.30.(금)	9
3차	5.25.(화)~6.11.(금)	7
4차	6.21.(월)~7.2.(금)	5
5차	8.2.(월)~8.13.(금)	6
6차	8.31.(월)~9.10.(금)	6
7차	9.16.(목)~10.1.(금)	2
8차	10.15.(목)~10.27.(수)	11
추가(9차)	11.12.(금)~12.2.(목)	7
합계	총 9차	60건

5

조사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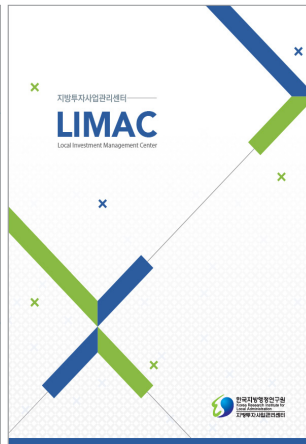
다. 홍보

- 2020년 연차보고서 발간
 - 2020년에 수행한 LIMAC 5주년 백서 발간(2015-2019년) 이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
- LIMAC 브로슈어 발간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별 목적과 업무 범위,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
- 홈페이지 개편
 -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빌딩 및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제작

■ 2020년 연차보고서



■ LIMAC 브로슈어



■ 모바일 홈페이지



3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성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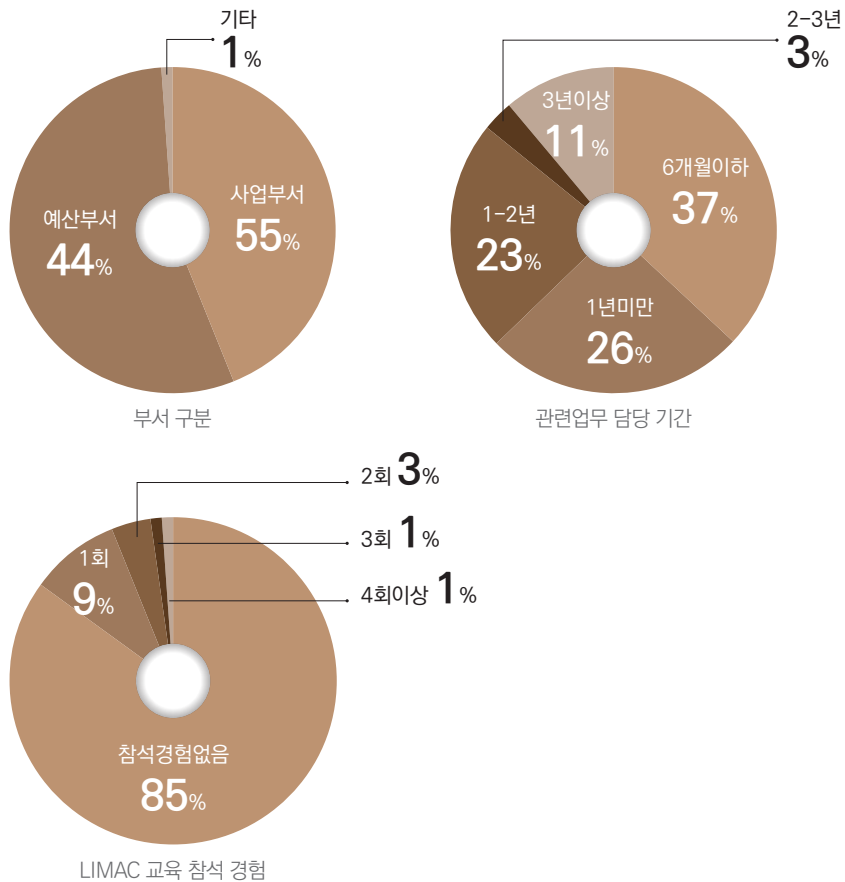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 전체 설문응답자 부서 현황은 사업부서 55%, 예산부서 44%로 나타남
- 관련 업무의 담당 기간은 6개월 이하 37%, 1년 미만 26%, 1~2년 23%, 2~3년 3%, 3년 이상 11%로 나타남
- LIMAC 교육의 참석 경험의 응답 결과, 참석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이 85%로 수강자 대부분이 교육을 처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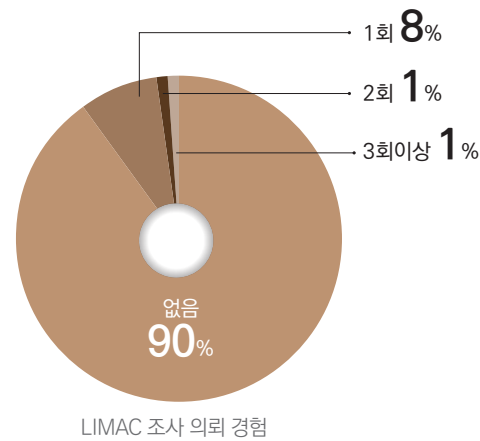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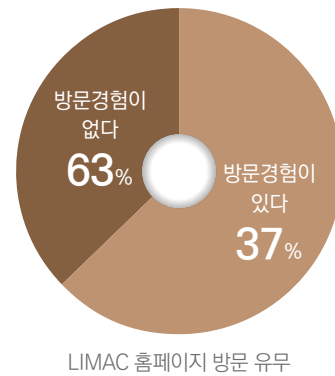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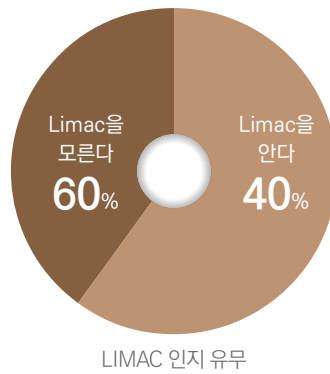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 응답자 40%는 교육 참석 이전에도 LIMAC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대부분(90%)이 LIMAC 타당성 조사 의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37%는 LIMAC 홈페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63%는 방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3)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한 반면, 44%가 집합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함
 -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교육참석에 따른 이동시간 절약,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의 몰입도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좋다는 부분이 언급됨
 - 집합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민원전화 등 업무를 수행, 민원인이 찾아오는 경우 응대, 업무로 인한 교육 집중력 저하 등으로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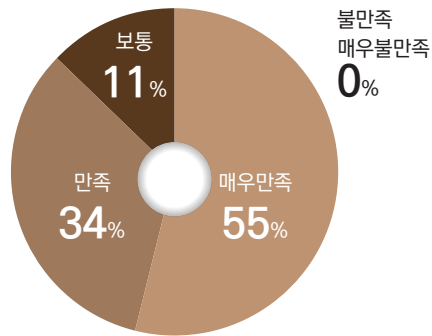
4)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 온라인 교육의 접속 및 접근성 만족도의 조사 결과, 응답자 55%가 매우 만족, 34%가 만족, 11%가 보통으로 응답
- 실시간 강의 영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44%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12%가 보통으로 응답함
- 온라인 교육 방식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39%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17%가 보통으로 응답
- 보완 사항으로 강의내용을 이후로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길 바라며 질의사항을 사전에 이메일로 받아서 교육 시 전달해주길 바라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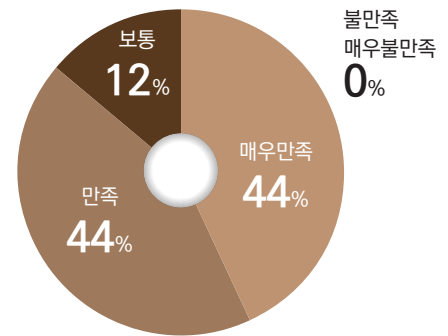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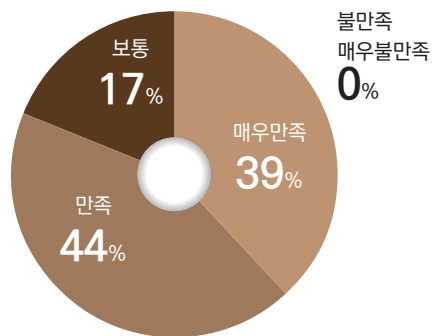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온라인 교육 접속 및 접근성 만족도



실시간 강의 영상 만족도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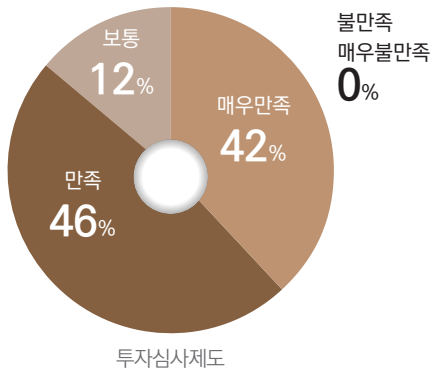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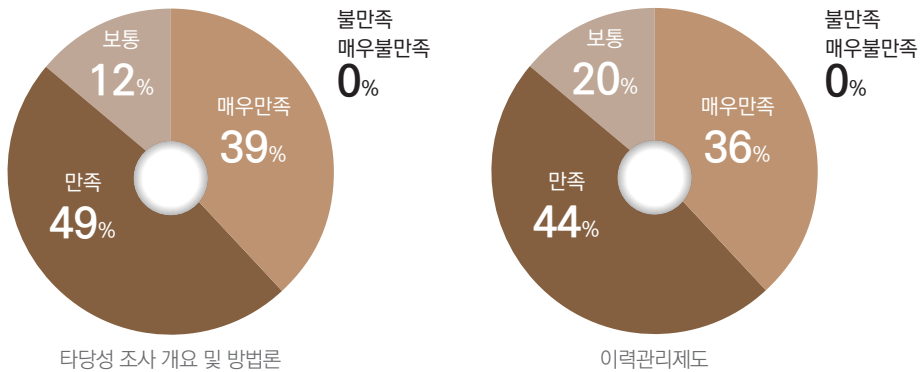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5)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교육 내용 및 시간 만족도
 - 교육 내용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36%, 만족 54%, 보통 10%로 응답
 - 교육 시간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34%, 만족 50%, 보통 15%, 불만족 1%로 응답
- 교육 내용의 활용성
 -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이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88%로 조사됨
 - 이력관리제도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78%로 조사됨
 - 투자심사제도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88%로 조사됨

■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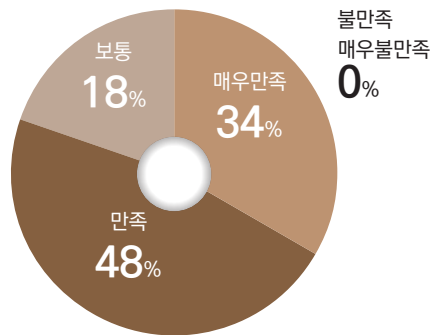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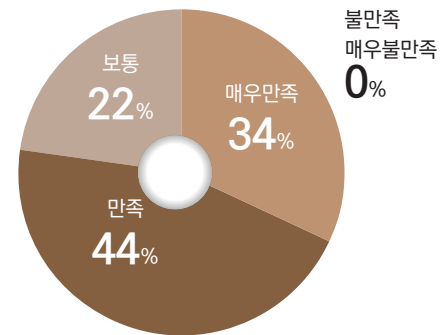
● 과목별 교육 난이도

-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의 난이도는 응답자 34%가 매우 만족, 48%가 만족, 18%가 보통으로 응답함
- 이력관리제도의 난이도는 응답자 34%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22%가 보통으로 응답함
- 투자심사제도의 난이도는 응답자 33%가 매우 만족, 43%가 만족, 21%가 보통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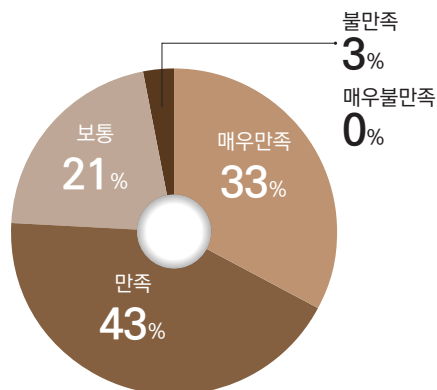
■ 과목별 교육 난이도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



이력관리제도



투자심사제도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교육의 좋은 점과 개선사항

■ 교육의 장점과 개선사항

장점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서 질의 사항을 바로 피드백 할 수 있음 - 투자심사 도입취지 등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됨 - 이력관리 시기에 맞춰서 들을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이 안정적임 - 교육 참석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질문도 편히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회의 시스템이 불안정함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법의 질의응답이 시간이 더 필요함 - 투자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보충해주길 - 중요한 사례 위주 및 중요한 질의 위주의 강의를 마련함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나. 2021년 TOM(탐)나는 컨설팅

1) TOM(탐)나는 컨설팅 개요

- 2020년 “찾아오는 컨설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TOM(탐)나는 컨설팅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 TOM(탐)나는 컨설팅의 ‘탐’의 음은 飮에서 따왔으며 Two-way On and off Meeting의 약자로 1) 찾아가는, 2) 찾아오는 3) 온라인 총 3가지의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택1 하여 추진
 -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자를 최소화하면서, 컨설팅의 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심화 컨설팅 수행
-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심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투자사업을 지원함
 - 타당성 조사의 체크포인트 심화 교육과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식 및 재상정 사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사업 지연 최소화

2) 컨설팅 수행 현황

- 2021년 TOM(탐)나는 컨설팅은 4월부터 12월 초까지 정기 1~8차 외 추가 회차를 포함하여 총 9차 동안 60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2021년 차수별 컨설팅 수행 실적

구분	컨설팅 기간	수행 건수
1차	3.29.(월)~4.8.(목)	7
2차	4.19.(월)~4.30.(금)	9
3차	5.25.(화)~6.11.(금)	7
4차	6.21.(월)~7.2.(금)	5
5차	8.2.(월)~8.13.(금)	6
6차	8.31.(월)~9.10.(금)	6
7차	9.16.(목)~10.1.(금)	2
8차	10.15.(목)~10.27.(수)	11
추가(9차)	11.12.(금)~12.2.(목)	7
합계	총 9차	60건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2021년 컨설팅 리스트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컨설팅 유형	문의유형
1	1차	경기	안산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2	1차	경기	광주시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3	1차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4	1차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5	1차	전북	임실군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찾아가는	투자심사
6	1차	대구	본청	대구 K-R&D캠퍼스 건립 지원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7	1차	강원	본청	강원도청사 신축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8	2차	대전	대덕구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9	2차	경기	고양시	IP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10	2차	경기	부천시	작동군부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11	2차	경남	양산시	양산 시립빙상장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12	2차	서울	동작구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13	2차	경기	안산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14	2차	강원	원주시	원주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15	2차	경기	화성시	화성시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16	2차	강원	본청	춘천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17	3차	광주	본청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	찾아오는	사업추진
18	3차	전북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찾아오는	사업추진
19	3차	전남	보성군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조성	찾아가는	투자심사
20	3차	전남	보성군	남도 낭만길 (보성 벌교~순천만 남파랑길) 명품화 재생사업	찾아가는	투자심사
21	3차	경북	본청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22	3차	전남	본청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23	3차	충남	아산	차량용 반도체·자율주행 R&D센터 건립	찾아오는	투자심사
24	4차	부산	본청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온라인	투자심사
25	4차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26	4차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27	4차	경북	포항시	다원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28	4차	서울	교육청	에코스쿨 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29	5차	경남	진주시	진주 공립과학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0	5차	충북	단양군	단양 디캠프(D-camp) 조성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1	5차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철도(트램) 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32	5차	경기	오산시	오산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공사	찾아오는	투자심사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컨설팅 유형	문의유형
33	5차	대구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4	5차	충남	천안시	천안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5	6차	서울	본청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6	6차	전남	광양시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7	6차	강원	삼척시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38	6차	경남	진주시	KAI비행센터 건립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39	6차	경남	진주시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40	6차	경기	구리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41	7차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42	7차	대구	본청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사업	찾아가는	사업추진
43	8차	충남	본청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44	8차	전북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45	8차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공사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46	8차	전북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찾아가는	타당성 조사
47	8차	전북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찾아가는	타당성 조사
48	8차	전북	김제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조성사업	찾아가는	타당성 조사
49	8차	전북	본청	세계서예비엔날레관(서예진흥센터) 건립	찾아가는	투자심사
50	8차	전북	전주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원	찾아가는	투자심사
51	8차	전북	전주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	찾아가는	투자심사
52	8차	서울	본청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53	8차	전남	본청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사업추진
54	추가	전북	남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찾아오는	타당성 조사
55	추가	전남	목포시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56	추가	경북	영덕군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57	추가	충북	청주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58	추가	충북	청주시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찾아오는	사업추진
59	추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찾아오는	투자심사
60	추가	대전	본청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찾아오는	사업계획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현황

- 지자체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16.7%), 경기(15%), 서울(11.7%) 순으로 높았음
- 반면 4개 시·도(인천,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컨설팅을 1건도 신청하지 않아 22년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현황

시도	시군구 등	컨설팅 건수(%)	
1 서울	본청(2), 동작구(3), 교육청, 교통공사	7	11.7
2 부산	본청(2)	2	3.3
3 대구	본청(2), 중구	3	5.0
4 인천	-	0	0.0
5 광주	본청	1	1.7
6 대전	본청, 대덕구	2	3.3
7 울산	-	0	0.0
8 세종	-	0	0.0
9 경기	성남, 부천, 안산(2), 고양, 구리, 오산, 화성, 광주	9	15.0
10 강원	본청(2), 원주, 삼척	4	6.7
11 충북	청주(2), 단양	3	5.0
12 충남	본청, 천안, 아산	3	5.0
13 전북	본청, 전주(3), 익산, 남원, 김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10	16.7
14 전남	본청(2), 목포, 광양, 보성군(2)	6	10.0
15 경북	본청, 포항(2), 경주(2), 영덕군	6	10.0
16 경남	진주(3), 양산	4	6.7
17 제주	-	0	0.0
합계		60	100%

■ 컨설팅 방식별 수행 현황

구분	수행 건수
찾아가는(LIMAC→지자체)	10
찾아오는(지자체→LIMAC)	49
온라인	1
합계	60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소결

- 21년 8차 수행 계획 대비 9차를 수행하여 수행률은 113%를 달성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당초 수행계획(4, 6, 8, 10월 2주 & 4주) 대비 조기 개최, 기간 연장, 추가 회차 수행이 이루어졌음
- 또한, 중앙투자심사 전에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북도청의 경우 시군 단위에 컨설팅을 홍보하는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전북 내 6개 시군의 “찾아가는 컨설팅”을 합동 수행 하기도 함

■ 컨설팅 진행 현장 사진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TOM(탐)나는 컨설팅에는 44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교육청, 공사)에서 총 60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 이 중 77명의 참석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함
- 컨설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 방식
- 마지막 문항은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서술식으로 문의
- 기존 LIMAC의 컨설팅 또는 공무원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2%(17명)에 불과하며 처음으로 LIMAC의 컨설팅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78%(60명)를 차지함
 -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를 볼 때, LIMAC의 공무원 교육과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 LIMAC 공무원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컨설팅 만족도 평균 점수

문항 (5점 만점)	LIMAC 교육 및 컨설팅 참여 경험	
	있음	없음
	(17명)	(60명)
(1) 찾아오는 컨설팅 신청을 통해 문의사항이 해소되었다	4.94	4.58
(2) 컨설팅 시간은 충분하였다	4.76	4.62
(3) 컨설팅 상담자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었다	4.94	4.73
(4) 컨설팅 상담자는 친절하였다	4.94	4.72
(5) 컨설팅 프로그램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4.88	4.62
(6)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해 만족한다	4.94	4.68
(7) 향후 찾아오는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	4.88	4.67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주요 설문조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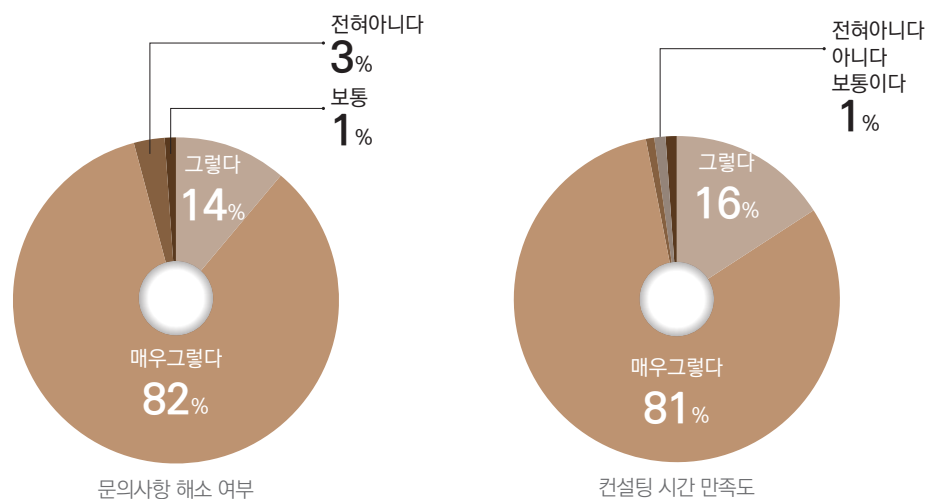
• 문의 사항이 해소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81.8%가 문의 사항이 '매우 해소' 되었다고 응답, 이어 '해소되었다'에 14%가 응답하여 TOM(탐)나는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컨설팅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시간은 70~90분 정도로 전체 응답자 중 81%가 컨설팅 시간이 충분(매우 충분 포함)하였다고 응답함
- 다만, 컨설팅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매우 충분하지 않은 포함)고 응답한 비율은 2%로 이동 시간 대비 컨설팅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COVID-19 상황이 개선된다면 향후 찾아가는 컨설팅 진행 확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문의사항 해소 및 컨설팅 시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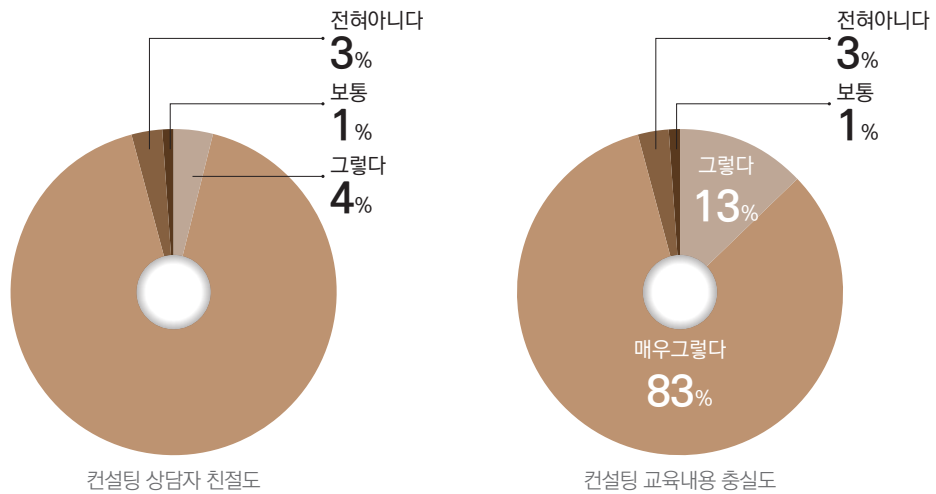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컨설팅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진행 시간은 의뢰 사업당 배정시간이 70~90분 내외이나, 사전 공문 접수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의뢰 사업을 검토함에 따라 심도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진행방식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96%(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 상담자의 친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6%(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는 컨설팅 상담자는 친절하였다고 응답함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
 - 전체 응답자 중 96%가 컨설팅 프로그램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충실하다고 응답함

■ 컨설팅 상담자 친절도 및 컨설팅 교육내용 충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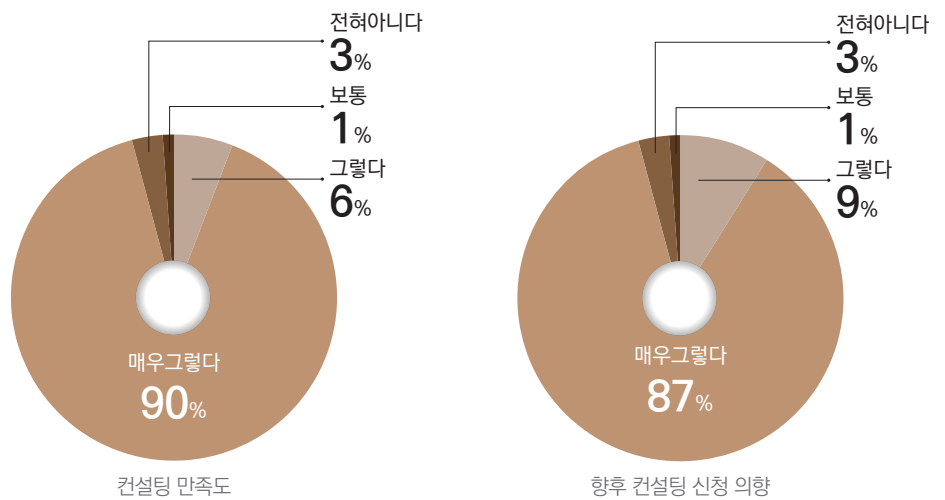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6%가 찾아오는 컨설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
- 향후 찾아오는 컨설팅 신청 의향
 - 전체 응답자 중 96%가 향후 찾아오는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TOM(탐)나는 컨설팅”을 지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컨설팅 신청 의향



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가.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투자심사 통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이에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 2021년 이력관리는 2013~2020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자체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절차
 -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함
 - 1단계 :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제출된 사업정보를 검토한 후 해당년도의 이력관리 대상사업 및 관련 핵심정보를 최종 확정함
 - 2단계 : 사업비 규모와 총사업비 증감 비율 및 일정지연 정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사 대상 가능성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함
 - 3단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및 행정안전부 및 LIMAC은 이를 검토하며, 또한 차년도에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함

나. 2021년 이력관리제도 수행 현황

- 2021년 이력관리 대상 : 1,602건
 - 2021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20년 신규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준비단계 사업 285건과 2013~2019년에 통과한 추진단계 사업 1,317건으로 총 1,602건임
 -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215건은 2020년 말 기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0건은 계획 변경, 국비 미확보, 소송 등으로 인해 재심사를 받거나 사업 추진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됨

구분	합계	진행중	완료	취소·중단
2020년 신규 통과 사업 (준비단계)	285	276	6	3
2013~2019년 통과 사업 (추진단계)	1,317	1,071	209	37
합계	1,602	1,347	215	40

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 2021년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수립 검토 : 44건
 - 2021년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추진단계 사업에서 중단 및 완료사업을 제외한 1,071건을 대상으로 사업비 변동, 사업내용 변경, 사업 중단 및 지연 여부, 사업기간 변경,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관련 민원/소송/분쟁 여부,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등으로 검토한 결과 중점관리후보사업으로 총 185건을 선정함
 - 이 중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으로 최종 44건을 선정하고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이력관리 대상 및 진행 비교

구분	2020년 이력관리	2021년 이력관리
투자사업 심사 기간	2013~2019년(7년)	2013~2020년(8년)
투자심사 구분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사업비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원 이상 사업 대상
사업건수	1,575개	1,602개
중점관리사업 선정 수	16개	44개
자료구축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자가진단 기준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다. 2021년 이력관리제도 개선사항

-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체계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2020.12.29.)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절차 및 세부기준 수립
 - 이력관리 업무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수행주체를 체계적으로 제시
 - 정보입력 관련내용 수정을 통해 2018년부터 수행 중인 LIMAC의 DB 구축 절차와 일치시킴
- 투자사업 이력관리 DB 시스템 개선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투자사업 정보관리를 위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2022년까지 온라인 기반 DB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4

부록

1

기관 주요연혁



2014

2014. 12

「지방재정법(‘14. 11. 29.시행)」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2014.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2014. 12

이상용 소장 취임



2015

2015. 01

타당성 조사 수행

2015. 12

이상용 소장 이임



2019

2019.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2)

2019.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서초동 파크 빌딩 이전



2020

2020. 05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2020. 0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2020. 10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0-51호)



2016

2016. 01
임성일 소장 취임

2016. 03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2016. 04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2016. 11
임성일 소장 이임

2016. 12
이효 소장 취임



2018

2018. 04
이효 소장 이임

2018. 04
이삼주 소장 취임

2018. 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양재 외교센터)

2018. 1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2021

2021. 06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2021. 11
조기현 소장 취임

2021.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로 이전

2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일정	타당성 조사		중앙(시·도) 투자심사		
	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	의뢰		심사
1차	1. 15.	1. 31.	중앙	1. 1.	~2월말
			시도	전년도12. 15.	
2차	4. 15.	4. 30.	중앙	3. 31.	~5. 31.
			시도	3. 15.	
3차	7. 15.	7. 31.	중앙	6. 15.	~8. 15.
			시도	5. 31.	
4차	9. 30.	10. 15.	중앙	8. 25.	~10. 25.
			시도	8. 10.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수행 절차



3

주요행사 (2021년 기준)



기획부 조사방법역량강화 세미나



평가부 조사방법역량강화 세미나



2021년 비대면 온라인 공무원 교육 현장

연말세미나
(2021년)



컨설팅
(2021년)





타당성 조사 사업설명회 현장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타당성 조사 설명회 개최





2021년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2021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발행처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9
(반곡동,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6층
TEL 033-769-5500
FAX 033-769-5545
<http://limac.krila.re.kr>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인 조기현

